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2018. 12



세법연구 18-07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2018. 1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신 상 화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특수전문직 3급

정 훈 특수전문직 3급

목차

I. 서론	7
II. 암호화폐의 개요	9
1. 암호화폐의 용어 및 정의	9
2. 암호화폐의 현황	11
가. 암호화폐의 유형	11
나. 암호화폐의 거래현황	18
III.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22
1.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22
가. 통화	22
나. 금융투자상품	23
다. 상품	24
라. 재산상의 가치	24
2. 암호화폐 과세제도	25
가. 현행 과세제도	25
나. 선행연구	25
3.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인프라	28
IV. 주요국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31
1.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조사 보고	31

2. 미국	34
가. 과세제도	34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37
3. 일본	46
가. 과세제도	46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50
4. 독일	57
가. 과세제도	57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58
5. 호주	64
가. 과세제도	64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69
6. 캐나다	73
가. 과세제도	73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76
7. 싱가포르	80
가. 과세제도	80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82
8. 국제비교	83
가. 과세제도	83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90
V. 시사점	98
1. 과세제도	98
가. 암호화폐의 구분	98
나. 소득세	99
다. 부가가치세	102

2. 규제 및 과세 인프라(조세행정 측면)	103
가. 입증책임	103
나. 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105
다. 제도권 외의 거래에 대한 대응	107
라. 자발적 신고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109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II-1〉 코인의 5가지 특성별 분류와 사례	13
〈표 II-2〉 토큰의 전형적인 형태	15
〈표 II-3〉 주요 암호화폐의 특성	16
〈표 II-4〉 주요 암호화폐 시장가치 및 공급한도 현황	17
〈표 IV-1〉 2014-2017 기간의 Title 31, 암호화폐 조사	43
〈표 IV-2〉 주요국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비교	89
〈표 IV-3〉 주요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과세행정 비교	96

그림 목차

[그림 II-1]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현황	18
[그림 II-2] 교환화폐(법정, 암호)의 분류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비중(2018년 9~10월)	19
[그림 II-3] 지갑제공자의 소재지	20
[그림 II-4] 전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물량 기준 주요 법정통화(2018년 9~11월)	21

I. 서론

- 2017~18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열풍 이후 과열된 암호화폐 시장은 열기가 가라앉음
 -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은 업비트 기준 2017년 12월 2,400만원까지 치솟은 후 2019년 1월 현재 300만~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량도 2017년 12월 일일 최대 1억비트코인까지 거래되다가 2019년 1월 현재 일일 300만~500만비트코인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의 총시장가치는 2017년 12월 3,260억달러를 최고점으로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9년 1월 현재 620억 달러 수준으로 최고점 대비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¹⁾

- 암호화폐의 사회적 이슈화가 비록 이전보다 덜 되더라도 암호화폐의 특성이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관련 제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
 -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추적이 어렵다는 측면과 여전히 거래규모가 작지 않아 이전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졌을 뿐 관련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필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잠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세제는 아직 과세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현행 과세체계하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관행적으로 소득세, 부

1) CoinMarketCap(<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bitcoin/historical-data/?start=20130428&end=20190128>, 검색일자: 2019.1.31)

가가치세가 비과세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암호화폐 시장현황, 우리나라 제도 등과 국외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과세제도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국한하여 검토가 이루어짐
 - 한편 암호화폐의 익명성이라는 다른 자산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체계의 집행을 위한 거래 또는 소득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포착을 위한 규제 및 인프라의 중요성이 높으므로 이를 연구대상에 포함함
 - 단순히 실제법적 과세법령만을 갖추는 것은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이동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규제와 인프라를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음
 - 다만 모든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과세거래 포착과 연계할 수 있는 규제 등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규정이나 금융법 등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구성은 암호화폐의 개요, 우리나라 제도, 주요국의 제도 및 비교, 시사점으로 이루어짐

Ⅱ. 암호화폐의 개요

1. 암호화폐의 용어 및 정의

- 암호화폐의 용어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어의 대략적인 정의나 개념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가상화폐, 코인, 가상통화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란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통용되고 있음
 -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하면서 공개된 알고리즘에 근거하고 오픈소스 규칙을 따르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²⁾ 다른 디지털화폐 등과 구분되어 암호화폐란 용어로 적용됨³⁾
 - 그러나 최근의 여러 코인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발견됨
 - 세계 각국에서도 용어를 영문으로(또는 영문으로 번역하면) digital currency, virtual currency, crypto-token, payment token, cyber currency, electronic currency, virtual asset 등 다양하게 사용함⁴⁾
- 암호화폐 용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의도 확립된 바가 없어 여러 형태로 기술되고 있음

2) 김진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2018.1.18., p.2.

3)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법령상 또는 선행연구 등의 근거자료에서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하여 암호화폐란 용어로 사용함.

4)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June 2018., p.1.

- 미국 감사원에서는 법적 정의가 없음을 밝히며 정부가 발행한 법적 통화가 아닌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것으로 정의함
 - 또한 실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결제단위, 가치의 저장 및 교환의 매개 기능을 하지만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기술함⁵⁾
 - EU 보고서에서는 정의가 쉽지 않음을 전제로 선행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를 디지털로 표시된 가치로, 법정통화의 대안으로 P2P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일반 목적의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며 암호화기술로 뒷받침되며 법정통화와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함⁶⁾
 -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서도 전자화폐(e-money)가 아닌 암호화폐(digital currencies)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두지 않고 구분되는 여러 특성만을 기술하고 있음
 - 암호화폐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 자산이며, 가치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도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함⁷⁾
-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상정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일부 이의 정의가 확인되고 있음
- 2018년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암호화폐를 “분장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⁸⁾
 -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

5)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Virtual Currencies -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GAO-14-496, May 2014, p.4.

6)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p.20.

7)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Digital currencies*, November 2015, pp.4-5.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745, 2018. 9.27. 발의.

- 마찬가지로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의 개정법률안과 유사한 정의를 두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제외범위를 규정하여 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는 전자적 증표 이외에도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등을 범위에서 제외함
- 한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사한 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⁹⁾
 - 암호화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거나 상품권, 게임머니, 전자결제화폐 등을 제외함

2. 암호화폐의 현황

가. 암호화폐의 유형¹⁰⁾

- 암호화폐의 용어와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형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유형의 구분은 존재할 수 있음
 - (암호)화폐와 (유틸리티, 증권형) 토큰의 분류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목적, 효용 등의 구성 계층에 따른 분류도 적용될 수 있음
- 가장 세분화된 계층 기준으로는 목적, 효용, 법적 지위, 기초한 가치, 기술적 단계에 따라 구분한 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의 분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 목적(purpose)은 토큰(또는 화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암호

9)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정의).

10) Untitled Inc(<http://www.untitled-inc.com/the-token-classification-framework-a-multi-dimensional-tool-for-understanding-and-classifying-crypto-tokens/>, 검색일자: 2019.1.31)

화폐(cryptocurrencies), 네트워크토큰(network token), 투자토큰(investment token)으로 분류됨

- 효용(utility)은 토큰에 제고하는 효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사용토큰(usage tokens), 작업토큰(work tokens), 하이브리드토큰(hybrid token)으로 분류됨
- 법적 지위에 따른 분류로는 각국 법령에 따른 분류로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증권토큰(security token),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로 분류되며 세부적인 형태는 각 관할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초가치에 따른 분류로는 자산유동화토큰(asset-backed token), 네트워크가치토큰(network value tokens), 지분유사토큰(share-like tokens)으로 분류됨
- 기술계층(technical layer)에 따른 분류로 블록체인기반토큰(blockchain-native tokens), 비근본프로토콜토큰(non-native protocol tokens), (d)앱토큰((d)App tokens)으로 분류됨
- 다만 이러한 5가지 계층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판단 시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I-1〉 코인의 5가지 특성별 분류와 사례

목적(purpose)	효용(utility)	법적 지위(legal status)	기초가치(underlying value)	기술계층(technical layer)
암호화폐 (Cryptocurrencies) 설명: 순수 암호화폐를 의도한 토큰	사용토큰 (Usage Tokens) 설명: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을 제공하는 토큰	효용토큰 (Utility Tokens) 설명: 소유자에게 네트워크나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효용을 제공하는 토큰	자산유동화토큰 (Asset-backed Tokens) 설명: 기초자산의 청구권으로 작용하는 토큰	블록체인지본토큰 (Blockchain-Native Tokens) 설명: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수준에서 실행되는 토큰
대상: • 거래의 매개를 의도함 • 가치의 저장 기능	대상: • 보유자는 서비스의 배타적인 기능에 대한 접근	대상: • 발행된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부적인 네트워크/앱 통화이지만 반드시 통화일 필요는 없음 • 소유자에게 생태계와 수동적 투자자 역할 사이에서 활동적으로 기여하는 권리가 부여됨 • 증권유사 특성을 회피함	대상: • 기초자산의 실물 이전 없이 확인서를 통해 거래가 허용됨 • 발행자는 기초자산 유지의무가 있음 • 거래상대방의 위험이 존재함	대상: • 블록체인의 운영이 중요한 요소임 • 블록체인 합의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임 • 블록 인증자/여타 노드로부터 인센티브 체계의 일부분임
예: BTC(Bitcoin), ZEC(Zcash), KIN(Kin, Kik)	예: BTC(Bitcoin), STX(Stacks, Blockstack)	예: GNO(Gnosis), STEEM(Steem)	예: USD(Tether USD, Tether), GOLD(Gold, GoldMint), Ripple IOUs(Ripple)	예: BTC(Bitcoin), ETH(Ether, Ethereum), STEEM(Steem)
네트워크토큰 (Network Tokens) 설명: 특정 생태계(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내의 사용이 주요 의도인 토큰	작업토큰 (work tokens) 설명: 생태계에 기여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토큰	증권토큰 (Security Tokens) 설명: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토큰	네트워크가치토큰 (Network Value Tokens) 설명: 네트워크의 가치와 개발에 연계된 토큰	비근본프로토콜토큰 (Non-native Protocol Tokens) 설명: 블록체인 상위에 암호경제적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토큰

목적(purpose)	효용(utility)	법적 지위(legal status)	기초가치(underlying value)	기술계층(technical layer)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 생태계 내에서 토 큰의 가능성을 가진 · 통상적 암호화폐로 의도 되지 않음 <p>예: GNO(Gnosis), STX (Stack, Blockstack)</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큰 보유는 생태계에 기여하 기 위한 전제조건임 · 기여는 보상체계가 부여되거 나 보유자는 생태계/분산화 된 조직에서 효용을 획득함 <p>예: REP(Reputation, Augur), MKR(Maker, Maker DAO)</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유사특성을 보임, 발행실 체, 배당, 이익배분에 대한 의사 결정의 결의 · 보유자가 소유자로 간주 · 효용성은 없거나 거의 없음 <p>예: SPICE(SPICE VC), Bitwala(bt2)</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거래수요규모)에서 발행하고 교환되는 가치에 연계됨 · 네트워크 참여자가 주요 상호관 계에 의해 밀접하게 관련됨 <p>예: ETH(Ether, Ethereum), STEEM (Steem)</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토콜 합의체계의 필수적 인 요소임 · 노드의 인센티브체계의 일부임 · 필수적이지만 토큰에 대해 기 초한 블록체인에서 추적이 됨 <p>예: REP(Decentralized Oracle Protocol, Augur)</p>
<p>투자토큰 (Investment Tokens)</p> <p>설명: 발행한 실체 또는 기 초자산에 대한 수동 적인 투자가 주요 의 도인 토큰</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에게 자산가치 지 분 또는 발행실체의 미래 성과 지분을 배분 · 대부분 또는 전혀 기능하 지 않음 	<p>하이브리드토큰 (Hybrid Tokens)</p> <p>설명: 사용과 작업토큰의 성격 을 모두 가지고 있는 토큰</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기능에 접근권이 부 여됨 · 소유자에게 생태계에 기여하 도록 허용됨 	<p>암호화폐 (Cryptocurrencies)</p> <p>설명: 순수한 암호화폐의 토큰</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저장과 교환 매개로 사용 · 소유자들이 청구권에 대해 중앙 권한에서 응하지 않음 	<p>지분유사토큰 (Share-like Tokens)</p> <p>설명: 지분유사특성을 가진 토큰</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자는 소유자에게 발행실체 의 과실(배당, 이익)의 지분을 확 약함 · 의결권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적 근거가 대부분 없거나 미약함 	<p>(d)앱토큰 ((d)App Tokens)</p> <p>설명: 블록체인 상위에 애플리케 이션 수준에서 실행되는 토큰</p> <p>특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리케이션과 통합 · 노드나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 이션의 인센티브 체계의 일부분 · 필수적이지만 토큰에 대해 기 초한 블록체인에서 추적이 됨
<p>Neufund Equity Tokens (Neufund), DGX(Digix Gold, DigixDAO)</p>	<p>예: ETH(Ether, Ethereum, after Casper), DASH(Dash)</p>	<p>예: BTC(Bitcoin), ZEC(Zcash), LTC(Litecoin)</p>	<p>예: DGO(DigixDAO), LKK(Lykke)</p>	<p>예: WIZ(Wisdom, Gnosis), SAFE (Safecoin, SAFE Network)</p>

자료: Untitled Inc(<http://www.untitled-inc.com/the-token-classification-framework-a-multi-dimensional-tool-for-understanding-and-classifying-crypto-tokens/>), 검색일자: 2019.1.31

- 위의 기준들을 실제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토큰에서 몇 가지 패턴이 도출되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정형화된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준 특성간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목적분류에서 네트워크토큰은 기초가치분류에서 네트워크가치토큰의 형태로 나타남
 - 이러한 정형화된 분류의 결과가 암호화폐(cryptocurrency), 토큰화된 자산(tokenized asset), 토큰화된 플랫폼(tokenized platform), 지분특성토큰(token-as-share)임

〈표 II-2〉 토큰의 전형적인 형태

분류	특성
암호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저장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며 단위기능 · 중앙권한에 의해 발행되지 않음 · 채굴 또는 사전채굴될 수 있음
토큰화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접근권한 · 기초자산은 발행실체에 의해 보유됨 · 암호화폐와 달리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
토큰화된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실체에 의해 소유·운영되지 않는 플랫폼 유사 네트워크 ·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새로운 역할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배분되고 이용가능함 · 가치흐름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순환됨
지분특성토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또는 통화의 특성을 가지며 회사에 투자하는 토큰화된 상품 · 보다 유연한 형태: 유연성, 스마트계약을 통한 프로그래밍 가능 · 현재 규제체계에서 매우 높은 토큰 분류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시작함

자료: Untitled Inc(<http://www.untitled-inc.com/the-token-classification-framework-a-multi-dimensional-tool-for-understanding-and-classifying-crypto-tokens/>, 검색일자: 2019.1.31)

- 실제 주요 암호화폐의 특성을 보면 분산화, 전자적 거래, 법정통화로의 교환 등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¹¹⁾

11)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p.20.

- 실제 모든 주요 암호화폐는 분산화, 전자적 거래, 법정통화로의 교환 등에서는 일관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참여에 대한 허가의 필요성 여부나 ICO, 교환매개인지 여부에서는 일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Ripple은 블록체인의 자체는 공개이나 Ripple Inc. 회사가 네트워크에서 유효성 확인을 하기 때문에 허가형 블록체인이며, IOTA는 실제 교환매개로 사용되는 것이 관측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음
- 익명성 측면에서 Monero나 Dash는 다른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유사(pseudo) 익명이 아닌 완전 익명이 적용됨
 - 유사익명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 등은 추적이 가능함

〈표 II-3〉 주요 암호화폐의 특성

암호화폐	참여에 대한 허가여부	분산화	ICO	전자적 거래	법정통화로 교환	교환매개	유사 (Pseudo) 익명/익명	
Bitcoin	×	○	×	○	○	○	Pseudo 익명	
Ethereum	×		○					
Ripple	○		○					
Bitcoin Cash	×		×					
Litecoin	×		×					
Stellar	×		○					△
Cardano	○/×		○					△
IOTA	×		○					△
NEO	○		○					×
Monero	×		×					○
Dash	×	×	○	○				











자료: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p.51.

나. 암호화폐의 거래현황

1) 전 세계 현황

- 2019년 현재 암호화폐의 전체 개수의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발행·유통되고 있음
 - CoinMarketCap에서 나타난 암호화폐의 개수만 2,100여개에 이르며 이를 거래하는 시장은 16,300여개, 이의 총시장가치는 1.1조달러에 달함
 - 그중 시장가치 기준으로 상위 10개는 Bitcoin, Ripple, Ethereum 순이며 이중 Ethereum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공급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 중에 있음
 - Ethereum은 연간 1,800만개 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총공급량은 아직 미확정상태임

〈표 II-4〉 주요 암호화폐 시장가치 및 공급한도 현황

암호화폐	심벌		시장가치 ¹⁾	공급한도 ²⁾
Bitcoin		BTC	63,096,432,451	21 million
Ripple		XRP	13,209,369,184	100 billion
Ethereum		ETH	12,498,260,721	18 mil per year (총액은 미확정)
Bitcoin Cash		BCH	2,186,000,701	21 million
EOS		EOS	2,147,059,568	1 billion
Tether		USDT	2,048,897,384	3.08 billion
Stellar		XLM	2,013,289,424	100 billion
Litecoin		LTC	1,881,064,984	84 million
TRON		TRX	1,596,556,901	100 billion
Bitcoin SV		BSV	1,328,998,310	21 million

주: 1) 시장가치 순위 10위로 2019년 1월 21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US\$ 기준임.

2) 공급한도는 암호화폐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시장가치는 CoinMarketCap(<https://coinmarketcap.com/coins/views/all/>, 검색일자: 2019.1.21), 공급한도는 각 암호화폐 웹사이트 및 CoinGecko(<https://www.coingecko.com/ko>, 검색일자: 2019.1.21)

- 암호화폐의 규모는 2017년말~2018년초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여 현재는 2017년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 세계 암호화폐의 시가총액(total market capitalization)은 2018년 1월 8,300억달러(거래량: 45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1월말 현재 약 1,150억달러(거래량: 180억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1]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현황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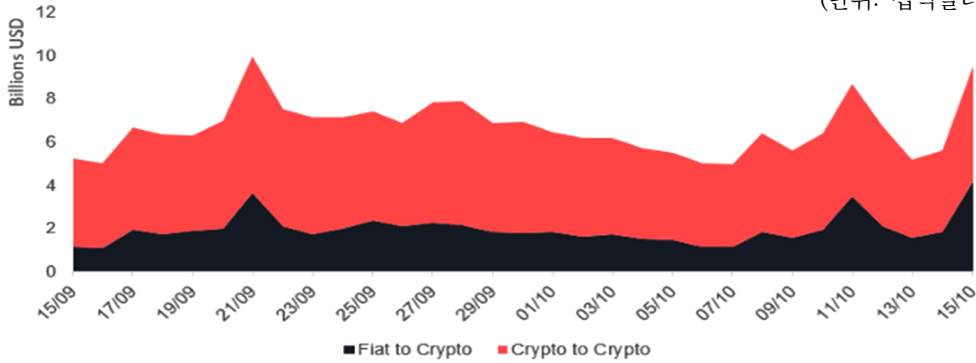
자료: CoinMarketCap(<https://coinmarketcap.com/charts/>, 검색일자: 2019.1.31)

- 전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 중 암호화폐 간의 전환(Crypto to Crypto) 비중은 법정통화와의 전환(Fiat to Crypto) 비중을 크게 앞서고 있음
-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의 전체 암호화폐거래소의 현물거래 중 암호화폐 간의 전환 비중은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¹²⁾

12) Cryptocompare Research&Development(<https://blog.cryptocompare.com/cryptocompare-october-exchange-review-new-web-trade-and-order-book-analyses-b776eb8bcb93>, 검색일자: 2019.1.28)

- 해당 추세는 동년 익월에도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음¹³⁾

[그림 11-2] 교환화폐(법정, 암호)의 분류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비중(2018년 9~10월)
(단위: 십억달러)



자료: Cryptocompare Research&Development(<https://blog.cryptocompare.com/>, 검색일자: 201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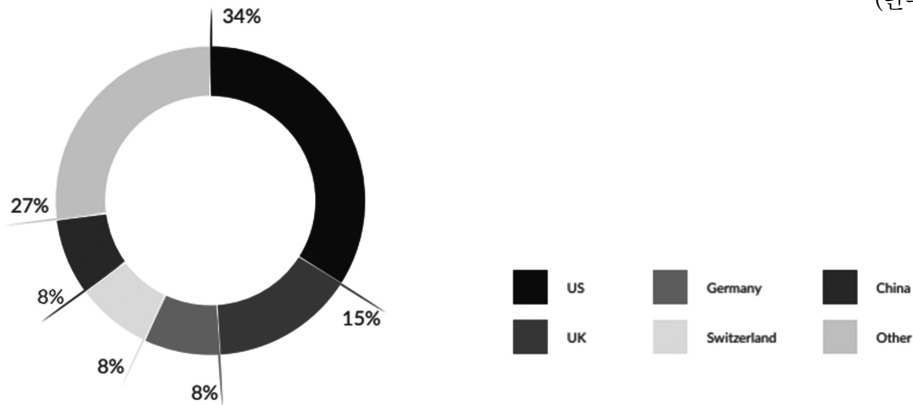
- 암호화폐를 보관하려면 지갑제공자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유럽과 북미에 소재하며 일부만이 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음¹⁴⁾
 - 2017년 기준 약 81%의 지갑제공자가 유럽과 북미에 소재하고 있으며, 73%의 지갑제공자가 프라이빗키를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관리 지갑제공자가 아닌 것을 의미함
 - 반면에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지갑이용자는 61%에 불과함
 - 지갑제공자의 24%만이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법정 통화와의 교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임

13) Cryptocompare Research&Development(<https://blog.cryptocompare.com/cryptocompare-november-exchange-review-6d1416f3378a>, 검색일자: 2019.1.28)

14) Garrick Hileman & Michel Rauchs,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2017, pp.49-50.

[그림 11-3] 지갑제공자의 소재지

(단위: %)



자료: Garrick Hileman & Michel Rauchs,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2017, p.50.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숫자의 공식 집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30개 이상의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2018년 1월 국무조정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37개 이상으로 추산됨¹⁵⁾
 -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암호화폐거래소는 총 22개임¹⁶⁾
 - 국내 주요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음

- 전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의 비트코인에서 법정통화로의 환전비중에서 원화의 비중은 세계 3위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상당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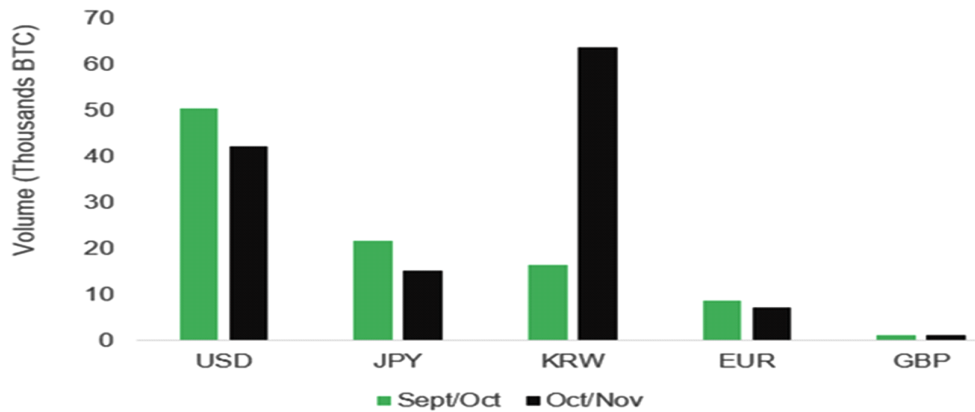
15)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보도자료, 2018.1.18.

16) 한국블록체인협회(<http://www.kblockchain.org/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22&menuid=001002001&searchcategory=A>, 검색일자: 2019.1.28)

- 2018년 9~10월의 기간 동안 원화는 암호화폐와 교환된 전체 법정통화 중 17.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11월에는 50% 이상을 차지함¹⁷⁾

[그림 II-4] 전 세계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물량 기준 주요 법정통화(2018년 9~11월)

(단위: 천BTC)



자료: Cryptocompare Research&Development(<https://blog.cryptocompare.com/>, 검색일자: 2019.1.31)

17) 2018년 10~11월에는 우리나라 업체의 프로모션 행사가 많아서 원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https://blog.cryptocompare.com/cryptocompares-november-exchange-review-6d1416f3378a>, 검색일자: 2019.1.28)

Ⅲ.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1.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규정이 매우 어려움. 이 장에서는 암호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들과 개략적으로 비교함¹⁸⁾¹⁹⁾
-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를 정립하기 어려움
- 비교법적으로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내린 국가는 아직까지 없음²⁰⁾

가. 통화

- 암호화폐는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정 발행주체가 없고 국가에 의한 강제적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통화로 분류할 수 없음²¹⁾
- 법정통화는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결제 수단과는 차이가 있음
- 암호화폐는 지급결제수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정 발행주체가 없고 국가에 의

18) 김흥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15(3), 2014, pp.396-397.

19) 한정미·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8., p.101.

20)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p.19.

21) 정순섭,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공청회, 2017.12. 4. p.27.

한 강제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점²²⁾을 고려하면 통화로 분류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²³⁾

나.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회피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얻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됨²⁴⁾

□ 증권은 발행자를 필수요건으로 하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발행자가 없으며 파생상품의 분류(선도, 옵션, 스왑) 중 암호화폐와 부합하는 것이 없으므로 암호화폐는 현행 법령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음²⁵⁾²⁶⁾²⁷⁾

○ 암호화폐가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발행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행 법령상 증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 다만, ICO(Initial Coin Offering)에 의해 발행하는 토큰은 구조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암호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암호화폐 자체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22) 「한국은행법」 제47조.

23) 금융감독원,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보도자료, 2017.6.23.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25) 정순섭(2017), p.28.

26) 김홍기(2014), p.396.

27) 정경영·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I)-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8., pp.121-122.

다. 상품

- 암호화폐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원적 내재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상품과 차이점이 있음²⁸⁾
 - 상품이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내재가치가 있음
 - 암호화폐는 실물자산인 금과 비슷하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품과 차이점이 있음

라. 재산상의 가치

- 암호화폐는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고 일부 소매업장 등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재산상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²⁹⁾³⁰⁾
- 우리나라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몰수와 관련된 판례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³¹⁾
 -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나타내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하도록 한 일종의 가상화폐이고,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용역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은 몰수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함³²⁾

28) 김흥기(2014), p.395.

29) 한정미·안수현(2017), p.101.

30) 정순섭,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원, 2017.8., p.29.

31)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의미하는바, 동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본 판례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인지에 대하여 판결함.

- 그러나 현행 민법상 암호화폐가 재산권으로 인정되지는 않음³³⁾³⁴⁾
 -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민법상 채권이나 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2. 암호화폐 과세제도

가. 현행 과세제도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유권해석³⁵⁾ 이외에 암호화폐 과세방법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음
 - 국세청은 비트코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원론적 해석으로 이해됨
 -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정부는 관련 TF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해 검토 중임³⁶⁾

나. 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세법」상 개인의 사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³⁷⁾³⁸⁾
 - 개인의 사적 자산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33) 정순섭(2017), p.29.

34) 배승욱, 「가상통화 법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논문, 2018, pp.39-49.

35) 서면-2014-부가-21616, 2015.12.29.외.

36)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211353160656>, 검색일자: 2019.1.4)

37) 홍도현·김병일(2015), pp.132-133.

38) 윤명옥,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8(2),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6. p.57.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의 사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음

-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및 출자지분, 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음

-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³⁹⁾⁴⁰⁾⁴¹⁾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20호에 걸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업종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제21호에서는 그 외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성, 독립성 및 반복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20호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측면에서는 암호화폐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음에 근거하고 있음⁴²⁾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 또는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함⁴³⁾⁴⁴⁾

39) 이강, 「비트코인에 관한 세법상 쟁점」, 『가천법학』, 7(4),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2., pp. 181-183.

40) 김병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경희법학』, 52(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255.

41) 신상화·강성훈, 『가상화폐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p.90-91.

42) 신상화·강성훈(2015), pp.88-90.

43)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32(1),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2. pp.78-84.

-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선행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는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와 비과세대상인 경우가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함⁴⁵⁾
 -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급수단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함
 -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거래는 면세대상인 금융용역과 유사하나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함⁴⁶⁾

- 그 외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바,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⁴⁷⁾
 -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⁴⁸⁾⁴⁹⁾⁵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은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⁵¹⁾

44) 김병일(2018), pp.250-252.

45) 위의 책

46) 정승영(2017), pp.83-84.

47) 김병일(2018), p.259.

48) 김병일(2018), p.260.

49) 이강(2014), pp.186-189.

50) 신상화·강성훈(2015), p.93.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인프라

-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지 않음
 - 2017년 9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동TF가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함

- 다만, 2018년 1월에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⁵²⁾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자금세탁방지규제를 취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주요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 정의함
 - 암호화폐란 거래상대방에게 교환수단 또는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⁵²⁾
 - 암호화폐 취급업소는 암호화폐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⁵³⁾

52)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으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상품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는 제외함.

53)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17.12.28.

-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여함
 - 강화된 고객확인(EDD) 실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이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의심거래보고의무 부여
 -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여야 함
 - 암호화폐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정부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도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⁵⁴⁾
-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상호 등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기록 보존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⁵⁵⁾⁵⁶⁾
- 이용자가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제도를 도입함
 - 이용자의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비교가 가능해짐
- 그 외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ICO와 마진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⁵⁷⁾
-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음

54) 금융위원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18.11.27.

55)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보도참고자료, 2018.1.23.;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17.12.28.

56) 관련 뉴스에서는 2018년 9월 현재 우리나라 4대 암호화폐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만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거래소의 실명확인 전환율은 40~50%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함(<https://www.coinpress.co.kr/2018/09/12/9651/>, 검색일자; 2019. 1. 14.).

57)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보도참고자료, 2017.9.29.

-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 및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제
휴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용자가 암호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등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공여 거
래를 금지함

IV. 주요국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1.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조사 보고⁵⁸⁾

- 미국 의회 법률도서관의 세계법률조사센터는 2018년 전 세계 주요국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각 대륙별로 130개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과 정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 기존 2014년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법령과 정책을 조사함
 - 조사결과에서는 암호화폐의 용어 사용의 차이 존재, 공통적인 정부의 투자 유의 공지, 국가마다 차별적인 자금세탁과 테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 및 투자금지 정책, 일부 국가에서 ICO시 증권 등으로의 규제, 국가간 과세방식의 차이 등이 확인됨

-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권화된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형태에 대해 각 국가들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태국 및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캐나다와 중국 및 대만에서는 가상상품(virtual commodity), 독일에서는 암호토큰(crypto-token), 스위스는 지급토큰(payment token), 이탈리아와 레바논에서는 사이버통화(cyber currency)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음

58)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June 2018.

-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통용되고 있음
 - SEC 등의 성명서에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가 사용되고 있으나 재무부나 과세관청 등 미국 정부기관의 문서에서는 가상화폐로 기술하고 있음

- 대부분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은 시장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과 더불어 자금세탁과 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도 존재함
 - 일반적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는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통화와 차별성이 있어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며 변동성이 크면서 거래가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함
 -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자금세탁, 공중 등 협박 방지 및 조직범죄 규제에 포함시켜 관련 금융기관 등에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들도 존재함
 - 호주 및 캐나다 등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기관을 「자금세탁과 반테러금융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을 최근에 제정함

-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방식에 따라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남
 - 알제리, 볼리비아, 모로코, 베트남 등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투자 행위를 금지함
 - 카타르나 바레인 등 자국민에게 역내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반면에 방글라데시, 중국, 콜롬비아 등은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아닌 역내 금융기관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인 제한을 하고 있음
 - 중국, 마카오 및 파키스탄 등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규제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인 과세 문제에 대해 각국은 암호화

폐 과세분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체계로 나눌 수 있음

- 이스라엘: 일반자산, 불가리아: 금융자산, 스위스: 외환, 아르헨티나 및 스페인: 소득세 대상, 덴마크: 소득세 대상이면서 손실은 공제가능, 영국: 법인은 법인세,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은 소득세, 개인은 자본소득세
- 특히, EU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2015년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는 EU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국가로 벨기에, 프랑스, 영국,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등을 들고 있음

-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와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가하지 않는 국가가 있음
 - 전자의 예로 프랑스가, 후자의 예로 룩셈부르크가 대표적임
- 프랑스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통화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통화와의 교환은 지급용역에 해당하여 금융당국의 등록을 필요요건으로 하나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의회나 재무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프랑스의 과세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영국은 과세체계에서 암호화폐를 기존에 없는 특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소득과세는 그 거래의 활동과 참여자 간의 특성에 따라 과세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로 암호화폐가 지급되는 경우 통상적인 과세사례와 같이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외환과 채무관계에 일반규정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며 투자자인 개인은 암호화폐 거래 이익의 실현 시 자본소득으로 과세됨
-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가장 활성화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과세목적상 외환으로 간주하여 부유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

-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일정금액까지 지방정부수수료나 납부세액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국

가. 과세제도⁵⁹⁾

- 미국 과세관청(IRS)은 2014년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지를 공개하여 과세취급에 대해 명확히 함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의 판매, 교환 및 실물 경제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관계를 야기하는 과세결과를 가지고 있음
 - 이 공지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교환가능한(convertible) 암호화폐로 이는 실물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화폐에 한정하고 있음⁶⁰⁾
 - 비트코인은 미국달러, 유로 및 기타 화폐로 거래하고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환가능한 암호화폐의 하나로 예시함
 - 이 공지에서 다루지 않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는 재무부(the Treasury Department)와 과세관청에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지침을 공개할 예정임
- 암호화폐 과세는 '교환가능'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충족하지 않는 유틸리티 또는 증권토큰은 암호화폐 규제 및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59) Internal Revenue Bulletin: Notice 2014-21(https://www.irs.gov/irb/2014-16_IRB#NOT-2014-21, 검색일자: 2019.1.31)

60)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Guidance, FIN-2013-G001*, March 18, 2013, p.1.

-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재무부 또는 과세관청의 규정 또는 해석이 확인되지 않으나 ICO에 대한 SEC의 견해⁶¹⁾ 및 거래소 등의 절차 해설⁶²⁾ 등에서 확인됨
 - 토큰이 판례상 성립된 Howey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며 「증권법」이 적용됨
 - Howey 기준은 현금의 투자, 투자는 통상적인 기업에 대한 것임, 추진자(promoter)나 다른 인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에서 기대의 3가지 조건으로 이를 만족하면 투자계약으로 간주됨
- 공지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자산의 과세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음
-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과세관계가 성립하며 통화로 보지 않으므로 외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수취하면 자산의 교환거래로 보아 수취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를 총소득에 산입함
 - 공정가치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미국달러 환산가액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교환율이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면, 일관되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그 교환율에 따라 공정가치가 결정됨
 - 다른 자산과의 교환에서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지급한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보다 크면 과세대상 이익이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함
 - 채굴(mines)을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게 되면 그 일의 공정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함
- 암호화폐에 따른 손익의 분류는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에 따라 다르게 취급됨

61)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ttps://www.sec.gov/news/speech/speech-hinman-061418>, 검색일자: 2019.1.31)

62) An initiative of Coinbase, Coin Center, Union Square Ventures and Consensus, *A Securities Law Framework for Blockchain Tokens*, December 7, 2016, p.3.

- 암호화폐가 주식·채권·여타 투자자산과 같은 일반적인 자본자산이면 자본손익이 인식되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류되는 재고·기타 자산이면 사업손익으로 분류됨
 - 채굴이 사업목적인 경우 자기사업(self-employment)에서의 이익으로 보아 총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자기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 경우에도 동일함
 -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연방소득세, 연방보험기금세, 연방고용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함
- 따라서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의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 자본이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하는 일반세율로 보유기간 1년 초과는 독신 기준으로 38,600달러까지는 비과세, 이후 425,800달러까지는 15% 과세, 초과분은 20%로 과세됨
 - 일반세율은 10~37%의 누진세율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암호화폐를 다른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정보보고 의무도 동일하게 부여됨
- 따라서 사업목적상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비과세되는 미국 수취인에게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과 수취인에게 보고가 요구되며,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이러한 예로 임차료, 급여, 보험료, 연금 및 보상관계 등이 해당함
 - 암호화폐의 지급시 수취인의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TIN)를 요구하여야 하며, TIN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상당수 비특수관계인인 상인과 고객과의 지급결제 계약을 수행하는 제3자결제조직(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ation)은 거래당사자의 수와 결제금액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에 보고의무가 있음

- 상인의 연간 거래건수가 200건을 초과하며, 상인에게 지급되는 총결제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암호화폐와 관련한 신고불이행 등에 대해서 다른 불이행과 동일하게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됨
 - 예를 들어, 과소납부가 이루어지면 부정확관련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ies)가, 적시에 또는 정확한 거래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확한 보고에 따른 가산세(Failure to file correct information returns) 또는 부정확한 수취인 정보 보고에 따른 가산세(Failure to furnish correct payee statements)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은행보안법」과 과세관청의 역할

-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 BSA)」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기관과 자금용역사업에 대해 수많은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집행의무를 가지고 있음⁶³⁾
 - 자금용역사업(money services businesses: MSB)은 수표정산, 발행 및 여행자 수표의 상환, 현금 주문 및 이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거래보고와 의심활동보고 등의 BSA의 보고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과세관청은 재무부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의 위임에 따라 제도권 연방은행 등에 의해 규제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음

63)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As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Taxable Transactions Becomes More Common,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1, 2016.

- 과세관청은 소규모사업/자기사업부문의 특수조사기능과 형사조사를 통한 범죄 위반행위 추적을 통해 이러한 집행의무를 실행함

□ 2013년 FinCEN은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의 생산부터 이전까지 BSA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⁶⁴⁾

- 이 지침에서는 암호화폐의 재화·용역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하는 사용자(user),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업에 참여하고 상환할 권리를 가진 관리자(administrator) 및 교환거래소(exchanger)로 구분하여 BSA의 적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에서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란 용어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중개인 등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킴⁶⁵⁾

- 암호화폐는 전반적으로 거래의 매개(medium of exchange)로 사용되는 모든 항목의 수단으로 보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convertible virtual currency)를 법정통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거나 이의 대체를 위해 활동하는 통화로 정의함
 - 이러한 정의를 통해 비트코인 외에도 에스더, XRP(리플)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 반드시 통화의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닌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로 사용하는 경우나 비통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에 포함됨
-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의는 새로운 분류 신설이 아닌 기존의 자금이체(money transmission) 또는 자금용역사업에 귀속시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64)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2013-G001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March 18, 2013, pp.4-5.

65) Peter Van Valkenburgh, "The Bank Secrecy Act," *Cryptocurrencies, and New Tokens: What is Known and What Remains Ambiguous*, Coin Center Report, May 2017, pp.4-5.

- 지침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자 중 관리자와 거래소를 의무가 부여되는 MSB 또는 자금전송자로 분류하고 있음⁶⁶⁾
 - 거래소(exchanger)는 실제 통화, 펀드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인물, 관리자(administrator)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러한 암호화폐를 상환하는 권한을 가지는 인물을 의미함
 - 재화·용역을 위한 사용자는 MSB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리자나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수취 및 전송하거나 사유를 불문하고 암호화폐를 매매한다면 MSB에 해당하여 다른 제한이나 면제가 없다면 감시와 보고의무가 부여됨
 - 의무 위반시 민사제재와 형사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창설이 사용자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만이거나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BSA상 자금전송자(money transmitter)에 해당하지 않음⁶⁷⁾

-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관리 거래소만이 명확히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며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프로토콜 개발자(protocol developer)는 해당 가능성이 있음⁶⁸⁾
 - 관리 거래소(custodian exchange)는 중개인으로서 역할이 거래인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연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대상자에 해당됨
 - 반면에 비관리 거래소나 비관리 지갑제공자 등은 단순 매매 중개 또는 지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대상자가 되기 위한 암호화폐의 ‘수용 및 전송(accept and transmits)’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프로토콜 개발자는 자신의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매출한다는 점에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만 채굴자의 암호화폐 매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의무대상인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66) Peter Van Valkenburgh, op. cit., pp.5-7.

67)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op. cit., p.6.

68) Peter Van Valkenburgh, op. cit., pp.11-18.

- 거래소가 자금전송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자금세탁방지준수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함⁶⁹⁾
 - 특정 MSB는 등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존재하면 이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MSB가 2천달러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또는 활동으로 인지되거나 추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면 의심혐의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발행자의 확인(clearance records)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천달러 이상
 - 모든 MSB는 자금세탁방지준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함
 - MSB가 동일 고객에 대해 1일 1만달러 이상의 현금유출입 거래가 존재하면 15일 내에 특정거래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MSB가 동일 고객에 대해 1일 3천달러 이상의 자금이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고객 식별 ID, 고객기록 및 거래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송금자는 수신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MSB가 동일 고객에 대해 1일 1천달러 이상의 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 및 거래 정보를 포함한 거래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2) 재무부의 암호화폐 과세 평가⁷⁰⁾

- 2016년 재무부 조세행정 감사관은 암호화폐(virtual currencies)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시함
 - 평가에서 발견된 사항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등의 조치이나 지침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보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거래를 식별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69)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bsa_en_bank_reference.pdf, 검색일자: 2019.1.31.).

70)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As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Taxable Transactions Becomes More Common,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1, 2016.

- 평가 결과 재무부는 3가지 권고안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였음
 - 과세관청이 과세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실행방안에 대한 시기별 수행계획이 포함된 협력된 암호화폐 전략을 수립할 것
 - 다양한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필수 문서 요구사항과 과세대우를 반영하는 보완된 지침을 제공할 것
 - 과세대상거래에 사용된 암호화폐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3자 정보보고 문서를 보완할 것

- 첫 번째 권고사항은 과세관청의 각 부서 간 암호화폐에 대한 공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시간상 실행 계획과 도구, 과세관청의 책임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식별과 모니터링 등을 포함함
- IRS는 암호화폐 거래 등의 법령 준수와 불법행위를 방지할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세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BSA에 반하는 잠재적 형사상의 위반활동에 대한 집행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관련 조직 운영에 미비점이 존재함
 - 암호화폐대응팀(Virtual Currency Issue Team)의 조직과 과세 공지(Notice 2014-21)를 공표했지만, 잠재적 납세자의 미준수행위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담당기능 간 협조체계가 부족함
- 따라서 IRS 내의 각 담당부서 사이에 협조체계와 실행방안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하도록 함
 - 대규모기업과 국제담당부서(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소규모기업/자기고용부서(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 및 형사조사 간 암호화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시기별 실행방안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전략은 IRS가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BSA, 형사조사 및 조세집행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모니터링하고 수행된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해야 함

- 두 번째 권고사항은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용별로 문서요구사항과 과세대우를 반영한 지침을 개선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
 - 기존 공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공지에 대한 공개의견에 대해 IRS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음
 - 기존 공지는 암호화폐 사용시 공정가치 측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기록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기존 공지에 대해 공개의견은 재산으로서 사용, 채굴, 거래에 대한 세법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구하고 있으나 IRS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⁷¹⁾
 - 따라서 IRS에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거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하도록 함

- 세 번째 권고사항은 과세대상거래에 사용된 암호화폐의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3자 정보보고 문서를 보완하는 것임
 - 현행 제3자 정보보고 문서(Form W-2, Form 1099-MISC, and Form 1099-K 등)는 암호화폐 거래와 다른 법정통화 거래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음
 - 현행 제3자 정보보고 문서는 IRS에 과세거래와 관련한 제3자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자발적 준수를 촉진하는 것인데, IRS는 이를 자동적 과소보고자(Automated Underreporter: AUR)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 신고서류와의 대사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의 식별을 위해서는 제3자 정보보고 문서에서 법정통화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를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양식을 개정하여야 함

- IRS는 이런 감사관의 권고사항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실제 후속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

71) 반면에 호주 과세관청은 암호화폐를 자본자산으로 간주함에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및 매매시 원가가 1만호주달러 이하이면 과세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후속적인 실행은 IRS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추가 지침 등이나 양식의 개정은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이후 실행 현황은 확인되지 않음
- 재무부의 2018년 IRS의 BSA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2016년 암호화폐 전략에 BSA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함⁷²⁾
 - IRS의 암호화폐와 자금세탁과 해외금융자산 보고 관련 조사는 2016년 BSA 프로그램이 암호화폐 전략에 편입된 이후에도 계획된 건보다 낮은 수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IV-1〉 2014-2017 기간의 Title 31, 암호화폐 조사

(단위: 건)

회계연도	계획된 조사건수	실행된 조사건수
2014	-	-
2015	-	?
2016	7	?
2017	12	6

주: 2016년 및 2016년 실행된 조사건수는 확인되지 않음.

자료: BSA Program Workplans and Performance Results Report for FYs 2014 through 2017;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Bank Secrecy Act Program Has Minimal Impact on Compliance,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4, 2018, p.17에서 인용.

- 이러한 IRS의 후속 대응 미이행에 대해 2018년 9월 의회 세입위원회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추가 지침 등의 개발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⁷³⁾
 - 2018년 9월 19일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의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을 위한 보다 강화된 지침을 제정하도록 IRS에 서

72)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Bank Secrecy Act Program Has Minimal Impact on Compliance,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4, 2018, pp.16-19.

73) Committee on Ways and Means(<https://waysandmeans.house.gov/brady-calls-on-irs-to-update-virtual-currencies-guidance/>), 검색일자: 2019.1.31)

한을 통보함

- 이 서한은 2017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 IRS의 집행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서한을 보낸 이후 수년간 IRS의 무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임
- 이 서한에서는 납세자의 암호화폐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강화된 지침의 즉각적인 제정 이외에도 IRS의 현재 대응상황, 새로운 지침에서 포함하려고 하는 내용 및 시간별 계획과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감사요청을 포함하고 있음

3) IRS의 납세불이행 정보 수집

- IRS는 거래소를 통한 납세자의 암호화폐 거래 관련 신고 미준수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거래소 이외의 P2P 거래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
 - 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통한 불이행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 공지를 준수하도록 납세자에게 알리는 보도자료⁷⁴⁾ 또는 캠페인⁷⁵⁾ 등만 존재할 뿐이며, 신고 또는 정보보고 불이행 시 가산세와 형사처벌 등의 사후적인 제재만이 확인됨
- IRS는 암호화폐 납세신고불이행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비특정자료제출(John Doe Summons)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허용함⁷⁶⁾

74) IRS(<https://www.irs.gov/newsroom/irs-reminds-taxpayers-to-report-virtual-currency-transactions>, 검색일자: 2019.1.31)

75) IRS(<https://www.irs.gov/businesses/irs-announces-the-identification-and-selection-of-five-large-business-and-international-compliance-campaigns>, 검색일자: 2019.1.31)

76) Department of Justice(<https://www.justice.gov/opa/pr/court-authorizes-service-john-doe-summons-seeking-identities-us-taxpayers-who-have-used>, 검색일자: 2019.1.31)

-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연방법원은 IRS의 코인베이스에 대한 비특정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인정함⁷⁷⁾
 - IRS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한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법원은 2만달러 이상의 계좌 가운데 2013~15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납세자 ID,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래내역, 기간별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코인베이스에 명령함
- 비특정자료제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법규 불이행(wrongdoing)이 없음에도 IRS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인 식별이 없는 개인들에 대한 잠재적 「내국세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비특정자료제출은 조사대상의 납세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아 식별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제출, 일반적으로 IRS는 제3자에게 식별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정보 제출을 요구해오고 있음⁷⁸⁾

4) 국제공조

- 미국은 2018년 7월에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와 함께 암호화폐를 포함한 국제적 조세범죄 및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J5(the Joint Chiefs of Global Tax Enforcement)를 조직함⁷⁹⁾
- 미국 등 5개국 과세관청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국제적 조세범죄 및 자금세탁에 공조하기 위해서 J5를 결성함
- J5는 각국의 자료 및 조세범죄 등에 대한 대응기술을 공유할 계획임
 - J5는 2018년 11월 8일 조세회피에 대한 전문적 조장자(enablers)를 찾아내기 위해 정보와 수사기술 등에 대해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77) United States v. Coinbase, Inc., Case No. 17-CV-01431-JSC (N.D. Cal. Nov. 28, 2017).

78) Robert S. Fink, *Tax Controversies - Audits, Investigations, Trials*, LexisNexis, 2016, 7-30.

79) IRS(<https://www.irs.gov/compliance/joint-chiefs-of-global-tax-enforcement>, 검색일자: 2019.1.3)

3. 일본

가. 과세제도⁸⁰⁾

1) 소득세

- 일본 국세청은 2017년에 암호화폐의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함
 - 일본 과세당국은 2014년 참의원에서 내각에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의 형식을 통해 암호화폐의 세무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힘⁸¹⁾
 - 암호화폐 거래가 소득세·법인세·소비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함
 - 2017년에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암호화폐의 세무처리 지침을 발표함
 - 이후 2018년 11월에 좀 더 세세한 형태의 질의응답자료(FAQ)를 발표함
- 암호화폐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5~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됨⁸²⁾
 -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사업 영위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됨
 -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됨
 - 잡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임시소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득임
 -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정산 이후 급여 및 퇴직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80)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2018/faq/index.htm>, 검색일자: 2018.12.18)

81) 安河内誠, 「仮想通貨の税務上の取扱い - 現状と課題 -」, 『税務大學校論叢』, 第88号, 2017.6. pp.403-405.

82)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law/joho-zeikaishaku/shotoku/shinkoku/171127/01.pdf>, 검색일자: 2018.12.18)

20만엔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 등에 대한 신고 및 납세의
무가 면제됨

-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교환시
점에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때
 -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때(암호화폐 간의 교환거래 포함)
 -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때
 -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때

- 납세자는 암호화폐의 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차액을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금액으
로 보아 관련 소득세를 부담함
 - 암호화폐의 거래가액은 양도가액 또는 교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시가임
 - 암호화폐의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관련 수수료 등이 해당됨
 -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⁸³⁾
 - 기타 필요경비로는 암호화폐의 매각수수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회선이
요금 등이 있음

- 채굴에 의해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고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채굴에 의해 암호화폐를 취득한 시점의 시가를 암호화폐 취득가액으로 함

- 보유한 암호화폐가 분기되어 신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신규 암호화폐의 취득가
액을 0으로 보아 추후 처분시점에 양도가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함

83) 이동평균법을 선택한 납세자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세무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시가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암호화폐의 분기시점에는 거래가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소득금액을 0원으로 간주함
- 암호화폐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일본 「소득세법」상 잡소득은 납세자의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익통산이 불가능함
- 암호화폐의 증거금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임
 - 일본 세법상 외환증거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신고분리과세(20%의 세율) 대상이지만, 암호화폐 증거금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임

2) 소비세

- 일본은 2017년 7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함
 - 일본은 2014년에는 암호화폐를 귀금속 등과 같은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음
 - 그러나 암호화폐가 지불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및 「소비세법」을 개정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⁸⁴⁾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함
-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 중개수수료는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84) 일본 「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4항.

3) 기타

- 일본 암호화폐업계에서는 암호화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암호화폐의 소득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주장이 있음⁸⁵⁾
 -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암호화폐거래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을 요구하는 업계의 건의가 있음
 - 암호화폐거래소득에 대해 현재와 같은 누진세율(5~45%)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음

- 일본 여당은 2018년 12월 14일에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19년 「세제개정대강」을 발표함⁸⁶⁾⁸⁷⁾⁸⁸⁾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암호화폐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문화
 - 기존 국세청의 FAQ 양식으로 존재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조문으로 명문화함⁸⁹⁾
 - 「법인세법」상 암호화폐 기말 평가방법을 시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규정함
 - 2018년 3월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위원회의 「암호화폐 회계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법인세법」에서도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암호화폐는 시가법,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저가법으로 기말 암호화폐를 평가함⁹⁰⁾
 - 「법인세법」상 기말 현재 미결제 암호화폐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말에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 상당액을 계상함

85)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방안 발표와 반응」, 『주간금융브리프』, 27(3), 한국금융연구원, 2017, p.27.

86) Coinpost(<https://coinpost.jp/?p=60290>, 검색일자: 2018.12.20)

87) Grant Thornton Yamada & Partners(<https://www.yamada-partners.gr.jp/wp-content/uploads/2018/12/H31.6-2F.pdf>, 검색일자: 2018.12.20)

88) Aerial Partners(<https://www.aerial-p.com/media/cryptocurrency-tax/2019-annual-tax-revision.html>, 검색일자: 2018.12.20)

89) 세무상 암호화폐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는 변동이 없으며(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국세청의 FAQ 양식으로 존재하던 내용을 조문으로 명확화한 것임.

90) 참고로, 일본 「법인세법」상 단기매매목적의 유가증권은 기말 현재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그 외의 일반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함(일본 「법인세법」 제61조의3.).

- 「법인세법」상 암호화폐 양도손익은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함
- 본 「세제개정대강」은 2019년 중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규율

-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등록의무 및 규제사항을 정하고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함⁹¹⁾
 - 2014년 마운트곡스의 파산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5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규제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암호화폐교환소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함
-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FATF의 정의와 유사함⁹²⁾
 - ① 물품의 구입·임차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인과 매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에 한하며 국내통화, 외국통화 및 통화표시자산은 제외함)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임
 - ②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①의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임

91) 배승욱(2018), pp.137-138.

92)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9(2), 한국증권법학회, 2018, p.244.

- 일본의 암호화폐교환업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청은 등록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⁹³⁾
 - ①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업무, ② ①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③ ①과 ②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금전이나 암호화폐 관리를 사업으로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하여야 함⁹⁴⁾⁹⁵⁾
 - 암호화폐교환업을 등록제로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음⁹⁶⁾
 - 암호화폐교환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교환업자가 주식회사 또는 외국암호화폐교환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 미등록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⁹⁷⁾

- 암호화폐교환업자는 이용자 확인의무, 기록 작성의무 등을 부담함⁹⁸⁾⁹⁹⁾
 - 「자금결제법」상의 준수의무
 - 시스템 리스크 관리, 이용자 정보 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 이용자 재산의 분별관리 등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준수의무
 - 암호화폐교환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추가함
 - 이용자 확인의무: 계좌를 개설하는 때, 200만엔 초과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거래 및 10만엔 초과 암호화폐의 이전 거래 시에 이용자를 확인하여야 함

93) 오성근(2018), pp. 247-249.

94) 법정통화와의 교환업자가 배제된 '암호화폐 지급관리업체' 또는 단순히 암호화폐의 예치와 이용자 간의 이체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는 규제대상인 암호화폐교환업자에 포함되지 않음(오성근(2018), p. 248.)

95) 등록실무는 일본 금융청 장관이 수행함.

96) 오성근(2018), p.271.

97) 배승욱(2018), p.175.

98) 권용수,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일감법학』, 3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2. pp.101-109.

99) 財務省, 「説明資料 (納税實務等を巡る近年の環境変化への対応について)-自主的な適正申告を促すための取組」, 2018.10.17. p.12.

- 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거래확인을 위해 취한 조치 및 거래기록(1만엔 이하 거래는 제외)을 작성하고 최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 수상한 거래의 신고의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거나 범죄수익의 은닉 등을 위한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내교육의 실시, 통괄관리자의 선임 등을 하여야 함¹⁰⁰⁾

□ 일본 금융청은 2018년 10월 암호화폐교환업자협회(JVCEA)에 회원사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규제권한을 부여함

- 급변하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와 자율규제의 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암호화폐교환업자협회를 「자금결제법」 제87조에 따른 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인정함
- JVCEA에 회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규제권한을 부여함

□ 한편,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대응현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2018년 3월에 연구회를 발족하고 2018년 12월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2018년 1월 코인체크의 580억엔 해킹사건 및 암호화폐의 투기적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2018년 3월에 ‘가상통화교환사업 등에 대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암호화폐의 규제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함
- 일본 금융청 산하 ‘가상통화교환사업 등에 대한 연구회’는 11차례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가상통화교환사업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함

□ 연구회는 암호화폐수탁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의 마련, 적절치 않은 암호화폐의 취급금지 방안 등을 제안함¹⁰¹⁾

100) 일본 경찰청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2017년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667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5,944건의 수상한 가상화폐거래가 신고되었다고 함(<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9683>, 검색일자: 2019.1.2.;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81206/p2a/00m/0na/022000c>, 검색일자: 2019.1.31)

101) Financial Services Agency(<https://www.fsa.go.jp/news/30/singi/20181221-1.pdf>, 검색일자: 2019.1.2)

-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수탁업체¹⁰²⁾에도 암호화폐교환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제시함
 - 암호화폐수탁업체의 해킹 및 도산위험으로부터 고객보호와 지갑업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한 FTAT의 권고사항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수탁업체에도 암호화폐교환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완벽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의 취급금지 방안을 제안함
 - 완벽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에 이용되기 쉽고 이용자보호에 적절치 않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암호화폐교환업자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종류를 사전신고대상으로 변경하고, 행정당국과 JVCEA의 공조가 필요함
-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예. 증거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건의함
 - 2017년 기준 파생상품거래는 암호화폐교환업자를 통한 전체 국내거래의 약 8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 다른 파생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건의함
- 연구회는 이 외 ICO, 고객자산의 관리강화 방안, 암호화폐교환업자의 도산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함
 - ICO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책임과 규제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함

2) 암호화폐 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인프라의 정비

-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올바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등에 관한 신고 등의 환경정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음¹⁰³⁾

102) 고객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이 지정하는 주소에 가상통화를 이전하는 업무(지갑관리업무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이들은 ‘암호화폐의 매매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음.

103)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2018/faq/index.htm>, 검색일자: 2019.1.2)

- 관련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교환업자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 암호화폐교환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고편의 향상 방안을 검토함
- 본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교환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거래부터 '연간거래보고서'를 고객에게 제공함
 - 2018년부터 암호화폐교환업자는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전자형식으로 교부함.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계산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간 암호화폐교환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됨
 - 2018년 이전에는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개별 교환업자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암호화폐 소득을 직접 계산하여야 했음
 - 연간거래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종류별 연간 구입·판매수량과 가격이 표시됨
- 또한, 암호화폐교환업자가 '잔고증명서'를 제공하여 암호화폐의 상속세 신고절차를 간편화함
 - 암호화폐교환업자는 상속인 등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암호화폐 잔액 등을 기재한 '잔고증명서'를 교부하여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절차를 지원함
 - 암호화폐교환업자는 잔고증명서의 교부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상속인에게 잔고증명서와 함께 피상속인의 생전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지급함

3) 국세청의 정보 수집 노력

- 납세자는 2019년부터는 동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별, 용도별, 소재지별 재산가액(시가)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¹⁰⁴⁾¹⁰⁵⁾

104)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law/tsutatsu/kobetsu/hotei/181121/01.htm>, 검색일자: 2019.1.3)

105)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information/release/kokuzeicho/2018/faq/index.htm>, 검색일자: 2018.12.18)

- 일본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재산채무조서'의 제출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표함¹⁰⁶⁾
 - 암호화폐는 '재산 소유자의 주소지(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재산으로 분류함¹⁰⁷⁾
 - 국외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도 일본 국내재산으로 분류됨
 - 활성화된 시장이 있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교환업체가 발표하는 당해 연도 12월 31일의 거래가격에 의하며 활성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12월 31일의 매매실례가액¹⁰⁸⁾(동일자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2월 31일 전일에 가장 가까운 날 중 당해 연도의 매매실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액
 - 익년 1월 1일부터 재산채무조서의 제출기한(익년 3월 15일)까지 암호화폐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일본 재무성은 2019년 「세계개정대강」을 통해 과세당국에 가상화폐교환업자에게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표함¹⁰⁹⁾
- 과세당국이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탈루혐의가 있는 고객의 주소, 성명 등 개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세계개편안을 발표함
 - 현재는 과세당국이 가상화폐교환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강제할 수 없어 가상

106) 일본은 소득세·상속세의 신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엔(퇴직소득 제외)을 초과하는 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엔 이상이거나 국외전출특례 대상 재산 합계액이 1억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 보유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107)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 송금 등에 관한 조서의 제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 제3항 제6호 및 제15조 제2항.

108) 동일자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12월 31일 전일에 가장 가까운 날 중 당해 연도의 매매실례가액.

109) Ministry of Finance(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9/20181221taikou.pdf, pp. 98-99., 검색일자: 2019.1.3)

화폐교환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¹¹⁰⁾

- 참고로, 일본 금융청은 보고된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지 않음¹¹¹⁾

- 정보조회 대상은 연간 1천만엔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자 중 절반 이상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류되는 자로 한정하며,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자료요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임

□ 그 외,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도쿄와 오사카에 별도 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 전자거래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¹¹²⁾¹¹³⁾

□ 참고로, 일본 재무성은 2017년 소득세 확정신고자로서 공적연금 이외의 잡소득금액이 1억엔 이상인 자 중 331명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함¹¹⁴⁾

110) 毎日新聞(<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20181204/p2a/00m/0na/010000c>, 검색일자: 2019.1.3)

111) OECD, *Effective inter agency co-operation in fighting tax crimes and other financial crimes*, 2017. p.350.

112)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2-08/crypto-investors-in-japan-face-tax-of-up-to-55-on-their-takings>, 검색일자: 2019.1.22)

113) 관련 뉴스에 의하면,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2017년 여름 이후의 거래자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교환업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171>, 검색일자: 2019.1.22)

114) 財務省, 「[納税實務等を巡る近年の環境変化への対応について]-自主的な適正申告を促すための取組-」, 財務省 説明資料, 2018.10.17. p.14.

4. 독일

가. 과세제도

- 독일 재무부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와 법적 통화 간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지침을 공개함¹¹⁵⁾
 - 이 지침에서는 전통적 통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을 기타 용역에 대한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으로 분류함
 - 다만, 게임머니 등 결제 수단이 아닌 가상화폐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비트코인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는 전통적 통화를 이용한 것과 동일한 과세효과를 나타냄

- 독일의 암호화폐 부가가치세 처리는 비트코인과 기존 법정통화와의 교환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부가가치세 거래인지 여부와 면제인지 판단이 이루어짐¹¹⁶⁾
 - 먼저 비트코인과 기존 법정통화와의 거래는 다른 지급 수단 사이의 교환이면서 제공한 용역과 수취한 대가 간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지침상의 용역 제공을 구성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 거래는 법적 통화로서 사용되는 통화, 은행권 및 코인과 관련된 거래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함

11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msatzsteuerliche Behandlung von Bitcoin und anderen sog. virtuellen Währungen: EuGH-Urteil vom 22. Oktober 2015, C-264/14*, Hedqvist, 27. Februar 2018, pp.1-2.

116) David Hedqvist v. Skatteverket, C-264/14(2015)(<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8983082BB8429AB035A7DF7C374DEED3?text=&docid=17030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10934370>, 검색일자: 2019.1.31).

- 암호화폐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회의 요청에 따른 재무부의 서면 답변에서 과세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음¹¹⁷⁾
 - 암호화폐의 채굴이 통상적인 활동(gelegentliche Tätigkeit)이라면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es: EStG)」 제22조 제3항의 기타소득(Einkünfte aus sonstigen Leistungen)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짐
 - 이 경우 256유로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됨
 - 반면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이 상업적 활동(gewerblichen Tätigkeit)과 관련되어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의 암호화폐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EStG상 사적자산(privaten Veräußerungsgeschäft)의 자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따라서 사적자산 자본소득 과세에 따라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간 600유로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누진세율로 과세됨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일반 금융법상의 규율

- 독일 금융감독당국(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aFin)은 암호화폐를 독일 「금융법(Kreditwesengesetz)」하의 결제단위(units of account)로 보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¹¹⁸⁾¹¹⁹⁾

117) Deutscher Bundestag,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2. Januar 2018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2018.1, pp.21-22.

118) Deutscher Bundestag, op. cit., p.21.

119) BaFin(https://www.bafin.de/EN/Aufsicht/FinTech/VirtualCurrency/virtual_currency_nod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 결제단위는 외환과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민사법」에 따라 사적 계약을 근거로 통화를 대체하는 형태의 교환거래에 지급수단으로 기능함
 - 따라서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나 외환 및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나 발행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일결제서비스감독법」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금융상품으로의 분류는 기반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됨
- 암호화폐를 이용한 경제적 유통거래의 일부로서 교환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인 경우 금융상품 취급에 대한 권한 인가(authorisation)가 요구됨¹²⁰⁾
 - 경제활동의 일부분인 교환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현금이나 예치금 대신에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한 인가가 요구되지 않음
 - 즉, 용역제공자나 공급자와 소비자가 대가로 암호화폐를 교환하더라도 금융상품 취급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암호화폐 채굴·매매의 경우도 동일함
 - 위의 상황에 암호화폐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요소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범에 처함
 - 현실적으로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BaFin에서는 사전적인 확인절차를 권고하고 있음
 - 인가가 필요한 상황은 플랫폼·거래소 사업자와 채굴·매매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음¹²¹⁾
 - 일반적으로 거래소라고 불리는 원금중개용역 플랫폼에 인가가 필요한 거래의 기술적 실행과 개별적 형태에 따라 구분됨¹²²⁾

120) BaFin(https://www.bafin.de/EN/Aufsicht/FinTech/VirtualCurrency/virtual_currency_nod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121) BaFin(https://www.bafin.de/EN/Aufsicht/FinTech/VirtualCurrency/virtual_currency_nod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 다른 인의 계정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플랫폼의 원금증개용역은 인가가 필요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인가가 필요함
 - 개인 참여자가 주문의 실현시까지 거래의 수량과 가격을 설정하여 플랫폼에 지시할 권한이 있음
 - 개인 참여자는 거래 상대방을 인지하지 못하며 플랫폼은 참여자의 대리인이 아닌 그 자신의 명의로 활동함
 - 거래의 과실이 자금 또는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침
 - 플랫폼은 참여자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고 암호화폐를 이전할 책임이 있음
 - 비원금증개용역인 다중거래증개자(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를 수행하는 플랫폼은 이론상으로는 요구사항이 없음
 - 다중거래증개는 사전에 결정된 약정 또는 시스템에 의해 다중 거래자가 금융상품의 지분을 거래하는 것으로 플랫폼은 암호화폐의 예치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임
- 암호화폐의 상업적 매매나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성과를 상업상의 목적으로 지분을 공모하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면 인가가 요구됨¹²³⁾
- 암호화폐와 법적 통화 간 자기계정으로 교환행위를 하는 제공자가 공개적인 매매 홍보 등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용역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함
 - 채굴 행위 자체는 인가 대상이 아니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채굴되어 판매된 암호화폐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지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인가 대상이 됨
- ICO에서 발행되는 토큰에 대한 지침에서는 토큰이 반드시 결제단위가 아닐 수 있으며 개별 건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¹²⁴⁾

122) BaFin(https://www.bafin.de/EN/Aufsicht/FinTech/VirtualCurrency/virtual_currency_nod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123) BaFin(https://www.bafin.de/EN/Aufsicht/FinTech/VirtualCurrency/virtual_currency_nod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124)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ufsichtsrechtliche Einordnung von

- 토큰을 무조건 결제단위로 보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인 분석에 따라 증권(Wertpapier), 집합투자기구의 지분(Anteil an einem Investmentvermögen), 자본투자(Vermögensanlage) 등이 될 수 있음
 - 양도 가능하며,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토큰에 주주권과 유사한 청구권이 부여되며, 상환되는 금융상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됨
- 각 금융상품의 분류가 적용되면 관련 금융법의 준수와 감독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벌과 형벌이 가해질 수 있음
- 분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거래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BaFin과 사전적으로 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율

- 독일은 EU회원국으로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을 준수하여 자국 「자금세탁방지법(Geldwäschegesetz)」을 제정하고 있음
 - EU는 1990년 자금세탁 목적의 금융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자금세탁방지지침」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5차 개정이 이루어짐
 - 2017년 중순에 제4차 개정 지침을 반영한 자국 「자금세탁방지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암호화폐가 반영된 제5차 개정 지침은 2년간의 검토를 거쳐 반영할 예정임¹²⁵⁾
- EU는 2018년 「자금세탁방지지침」의 제5차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킴¹²⁶⁾

sog. Initial Coin Offerings (ICOs) zugrunde liegenden Token bzw. Kryptowährungen als Finanzinstrumente im Bereich der Wertpapieraufsicht, Hinweisschreiben (WA), 2018.

125) BaFin(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EN/Fachartikel/2018/fa_bj_1805_Geldwaesche_en.html, 검색일자: 2019.1.31)

126)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criminal-justice/anti-money-laundering-and-counter-terrorist-financing_en, 검색일자: 2019.1.31)

- 제5차 개정 지침은 2018년 6월 EU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회원국은 2020년 1월까지 지침에 따라 각국의 법령을 개정할 의무가 있음
 - 개정 내용은 회사 등의 공개적 등록 설립을 통한 투명성 확보, 금융정보조사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IUs)의 권한 강화, 고위험 제3국의 평가 기준 확대와 보호절차 개선 등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중 FIUs의 권한 강화는 암호화폐의 규제와도 관련성이 높음
-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5차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암호화폐 및 지급제공자와 관련된 익명성을 제한하는 것임¹²⁷⁾
-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거래를 제공하는 자와 관리지갑제공자(custodian wallet provider)가 의심거래 식별 의무가 없음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등의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지됨
 - 암호화폐의 정의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보장되지 않는 가치를 나타내는 디지털 표시(representation)로 정의함¹²⁸⁾
 - 반드시 법정 통화로 구성되거나 법적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인 또는 법인격이 부여된 인에 의해 교환 수단으로 이전·보관·매매가 전자적으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지침의 의무 대상자에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서비스에 참여하는 제공자와 관리지갑제공자를 포함하고¹²⁹⁾ 등록의무를 부여함¹³⁰⁾
 - 관리지갑제공자란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보유·보관·이전하기 위해 사적 암호화된 키(cryptographic key)를 보호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12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18/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s 2009/138/Ec And 2013/36/Eu, 2018.6.

128) Amendments to Directive (EU) 2015/849, Article 3 (18).

129) Amendments to Directive (EU) 2015/849, Article 2 1(3)(g)&(h).

130) Amendments to Directive (EU) 2015/849, Article 47 1.

- 이러한 의무부여는 결국 FIU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심거래 보고를 통해 과세당국의 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¹³¹⁾
- 제5차 지침의 규율만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존재를 고려하여 FIUs의 권한 강화를 추가함¹³²⁾
 - 거래제공자와 관리지갑제공자의 규제만으로는 익명성 규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FIUs 권한을 강화함
 - 각 회원국의 FIUs 간 기능 및 능력 등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가 FIUs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의 접근권한과 지체 없는 정보의 교환 및 추적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인지함
 - 이러한 점을 위해 FIUs 간 권한과 협력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FIUs 간의 협조나 정보 교환·전파·이용은 각국의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의의 차이로 인해 지연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¹³³⁾
- 제5차 지침은 암호화폐의 많은 관계자 중에서 일부만을 규제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blind spot)가 존재함¹³⁴⁾
 - 지침상 의무가 배제된 암호화폐 주요 관련자들로는 지갑제공자나 매매플랫폼(trading platform) 등이 있으며 이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점을 EU에서도

131)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p.72.

13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18/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s 2009/138/Ec And 2013/36/Eu, 2018.6.

133) Amendments to Directive (EU) 2015/849, Article 57.

134)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op. cit., p.65 & p.79.

인지하고 있음

- 지갑제공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갑제공자도 존재하나 이들은 단지 기술적인 용역제공자일 뿐이어서 사용자의 암호화키를 관리하여 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지갑제공자와는 차이가 있음
 - 단순히 분산화된 전자적 P2P 거래 등을 제공하는 매매플랫폼은 현실적으로 규율하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리스트 관리는 더 불가능하여 배제함
-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중요한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maybe)는 것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적하여 필요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5. 호주

가. 과세제도

1) 소득세¹³⁵⁾

- 호주 국세청(ATO)은 2014년에 암호화폐의 세무처리지침을 발표하고 암호화폐는 현금이나 외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이득세 대상인 '자산(proper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함¹³⁶⁾
- 호주는 2018년 3월에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을 추가 발표함
- 지침의 적용대상인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되고 새로운 단위가 발생하는 암호기술이 사용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135)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General/Gen/Tax-treatment-of-crypto-currencies-in-Australia---specifically-bitcoin/>, 검색일자: 2018.12.11)

136)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media-centre/media-releases/ato-delivers-guidance-on-bitcoin/>, 검색일자: 2019.1.16)

- 암호화폐의 채굴, 판매, 중개 등의 사업을 통한 소득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됨¹³⁷⁾
 - 암호화폐의 채굴, 판매,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소득과 관련 비용은 일반 「소득세법」 규정을 따름
 - 암호화폐 거래는 일반적인 비현금자산의 교환거래와 동일함
 - 판매 또는 교환 등의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재고자산(trading stock)으로 간주됨
 - 사업자는 기말 재고자산 실사를 하고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함
 - 재고자산평가손익이 5천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실사 및 평가손익의 과세소득 반영의무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제됨

-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의 암호화폐 처분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됨
 - 양도차익은 암호화폐의 처분으로 수취한 금액 또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암호화폐 취득 시 지급한 금액 혹은 이전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암호화폐의 공정가액으로는 평판이 좋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액이 예시됨
 -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됨
 - 호주 「소득세법」상 개인이 1년 이상 소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만 소득세 과세됨

- 납세자는 아래와 같이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교환시점에도 자본이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때
 -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때(암호화폐 간의 교환거래 포함)

137)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law.ato.gov.au/atolaw/view.htm?DocID=TXD/TD201427/NAT/ATO/00001>, 검색일자: 2019.1.16)

-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때
 -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때
- 한편, 사적 용도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이 1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음¹³⁸⁾
- 호주 「소득세법」은 사적 용도로 취득한 자산(personal use assets)의 취득가액이 1만호주달러 이하이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개인이 이윤창출 또는 투자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적 용도로 취득한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 판매업자가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데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적 용도로 취득한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암호화폐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거나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프라이빗키의 취득 및 분실일, 프라이빗키와 관련된 지갑주소, 분실 또는 도난당한 가상화폐 취득가액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보유한 암호화폐가 분기되어 신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추후 처분시점에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함
- 분기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세무 이슈(일반 소득,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음

138) ATO TD 2014/25EC(<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src=hs&pit=99991231235958&arc=false&start=1&pageSize=10&total=7&num=2&docid=TXD%2FTD201426%2FNAT%2FATO%2F00001&dc=false&tm=phrase-basic-TD%202014%2F26>, 검색일자: 2018. 1.25)

-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의 처분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¹³⁹⁾
 - 거래일자
 - 거래 금액(호주달러)
 -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방(가상화폐 주소일지라도)
 - 가상화폐 거래영수증 또는 교환기록
 - 전자지갑기록
 - 대리인, 회계사 및 법률비용 지급내역
 - 세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

2) 부가가치세(GST)

- 호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GST(Goods and Services Tax) 목적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일반 금전(money)과 동일하게 취급함¹⁴⁰⁾¹⁴¹⁾
 - 호주 정부는 상원 경제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들여 2017년 7월 1일부터 GST 목적상 암호화폐를 일반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 호주 상원 경제위원회(Senate Economics Reference Committee) 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GST 과세대상 자산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취급할 것을 제안함
 - 세법 개정 이전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물물 교환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취득단계와 암호화폐를 매개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단계 모두에

139) 민간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기록·보관의무의 실무상 어려움이 제기되었으나, 호주 국세청은 개별 가상화폐 거래를 기록해주고 호주달러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예. cointracking) 이를 이용하는 경우 암호화폐거래의 기록 및 보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답변함(https://lets-talk.ato.gov.au/PAG/news_feed/consultation-substantiating-cryptocurrency-taxation-events, 검색일자: 2018.12.13)

140)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digital-currency/>, 검색일자: 2019.1.16)

141) Australian Government(<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B00210/Explanatory%20Memorandum/Text>, 검색일자: 2019.1.22)

서 GST를 부담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지적됨¹⁴²⁾¹⁴³⁾

- 예를 들어, A가 암호화폐를 매입하여 이를 통해 커피를 구매하는 경우 ① 암호화폐의 매입단계와 ② 커피 구매단계에서 GST를 부담하는 반면, A가 현금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커피 구매단계에서만 GST를 부담함
- 암호화폐가 GST 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납세협력부담이 증가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디지털시장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함

□ 「부가가치세법」상 암호화폐란 다음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디지털 단위로서 다른 국가의 화폐가 아닌 것을 의미함¹⁴⁴⁾

- 지급결제목적으로 동일 암호화폐의 다른 단위와 교환 가능할 것
- 어떤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 일반적으로 제약 없이 대중을 상대로 사용 가능할 것
- 가치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파생되지 않을 것
- 특정 자산을 수령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가 주된 목적이 아닐 것¹⁴⁵⁾

□ 호주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GST를 과세하지 않음¹⁴⁶⁾

-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즉,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동 암호화폐는 금전으로 보아 GST를 과세하지 않으며,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 GST 규정을 따름

142)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http://sjm.ministers.treasury.gov.au/media-release/089-2017/>, 검색일자: 2019.1.16)

143) Australian Government, *GST treatment of digital currency-discussion paper*, 2016.5. p.2.

144)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195-1.;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digital-currency/>, 검색일자: 2019.1.17)

145)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토큰 등이 이에 해당함.

146)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Financial-services-and-insurance/GST-and-digital-currency/#>, 검색일자: 2019.1.16)

-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거래’로 보아 GST를 과세하지 않음¹⁴⁷⁾
 - 암호화폐의 판매 및 중개거래는 금융용역(financial supplies)으로 보아 GST를 부과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¹⁴⁸⁾
 - 신규 암호화폐의 판매(ICO 포함) 또한 GST 과세대상이 아님
 - 다만,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암호화폐는 GST 목적상 화폐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ST가 과세될 수 있음

- 암호화폐를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¹⁴⁹⁾
 -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는 비거주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자금세탁방지 측면의 규율

- 호주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¹⁵⁰⁾을 개정하여 2018년 4월 3일부터 모든 암호화폐거래소(digital currency exchange providers)의 호주 금융거래정보원(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등록을 의무화함¹⁵¹⁾

147) *Ibid.*

148)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열거된 매입세액(예. 커미션, 브로커 수수료, 계좌유지비용 등)은 전액 또는 부분 공제될 수 있음.

149) *Ibid.*

150)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151) PWC(<https://www.pwc.com.au/legal/assets/legaltalk/new-amlctf-regulations-cryptocurrency-exchanges-23apr18.pdf>, 검색일자: 2018.12.13)

-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와 규제되는 금융시스템의 연결지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¹⁵²⁾
 - 암호화폐를 법정통화(호주달러 및 기타 외국환)로 교환하거나, 법정통화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AUSTRAC에 등록하여야 함
- 암호화폐 간의 교환업무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미등록 거래소 또는 등록조건 위반거래소에 대해서는 금고형(최고 2년에서 7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거래소는 아래 사항의 준수 의무가 있음¹⁵³⁾¹⁵⁴⁾
- 고객 신원 확인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 실행: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확인, 방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상한 거래 보고: 범법행위 또는 탈세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 AUSTRAC에 보고하여야 하며, 테러의심거래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24시간, 기타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¹⁵⁵⁾
 - 1만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보고: 1만호주달러 이상의 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AUSTRAC에 보고하여야 함¹⁵⁶⁾
 - 기록 유지: 거래기록, 고객 신원확인 절차 등의 기록을 7년간 보관하여야 함

152) Australian Government, *Final assessment regulation impact statement-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Bill 2017*, 2017.5. p.9.

153) Australian Government(<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B00166/Explanatory%20Memorandum/Text>, 검색일자: 2019.1.22)

154) HWL EBSWORTH LAWYERS(<https://hwlebsworth.com.au/update-on-the-australian-digital-currency-regulations/>, 검색일자: 2018.12.13)

155) AUSTRAC(<http://www.austrac.gov.au/suspicious-matter-reports-smrs>, 검색일자: 2019.1.22)

156) AUSTRAC(<http://www.austrac.gov.au/threshold-transaction-reports-ttrs>, 검색일자: 2019.1.22)

- 암호화폐거래소 및 관련자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¹⁵⁷⁾
 - AUSTRAC이 거액의 거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거래자들에게 안도감을 주어 암호화폐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이번 개정사항에 암호화폐 간 교환업무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제외되어 있는 점, 법령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¹⁵⁸⁾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간의 거래에 대해 AML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암호화폐끼리 교환하는 경우에 사용자 정보 추적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AML을 적용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2) 암호화폐의 과세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

- 호주 과세당국은 조세법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해 AUSTRAC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¹⁵⁹⁾
 - 호주 국세청은 AUSTRAC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고 온라인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없는 정보는 서면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¹⁶⁰⁾
 - 호주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행정목적으로도 AUSTRAC의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권한이 있음¹⁶¹⁾

157) PWC(<https://www.pwc.com.au/legal/assets/legaltalk/new-amlctf-regulations-cryptocurrency-exchanges-23apr18.pdf>, 검색일자: 2018.12.13)

158) PWC(<https://www.pwc.com.au/legal/assets/legaltalk/new-amlctf-regulations-cryptocurrency-exchanges-23apr18.pdf>, 검색일자: 2018.12.13)

159)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Part 11, Division 4, Subdivision A, 125 Access by the ATO to AUSTRAC information(<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68>, 검색일자: 2018.1.30)

160) 김재진·홍민옥·박지혜, 『소득세 징수행정에 관한 연구-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84.

- 호주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100포인트 신분확인 시스템(100-point identification checks)과 데이터매칭(data-matching)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함¹⁶²⁾
 - 관련 뉴스에 의하면, 호주 국세청은 100포인트 신분확인 시스템과 데이터매칭 기술을 연계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조사하겠다고 함
 - 100포인트 제도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매긴 점수를 합산해 100포인트를 넘겨 신분을 확실히 증명하는 제도임
 - 데이터매칭 기술이란 국세청의 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운영하여 불성실 세금신고 및 탈세에 대한 전산 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임¹⁶³⁾

- 호주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TFT를 운영하고 있음¹⁶⁴⁾
 - 관련 뉴스에 의하면 호주 과세당국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추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¹⁶⁵⁾¹⁶⁶⁾
 - 호주 국세청은 세무전문가, 변호사, 기술전문가, 은행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은행, AUSTRAC, 주세수입사무소(State revenue offices), 지하경제 TFT 등과 연계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식별하고자 함

161) 김재진·홍민옥·박지혜(2017), pp.80-81.

162) CCN(<https://www.ccn.com/australia-govt-seeks-public-input-on-cryptocurrency-tax-treatment/>, 검색일자: 2018.12.14)

163) 국세청,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p.80.

164) The Law Library of Congress(2018), p.105.

165) Bitcoin.com(<https://news.bitcoin.com/australian-taxation-office-creates-task-force-to-go-after-bitcoin-traders/>, 검색일자: 2018.12.14); Financial Review(<https://www.afr.com/news/policy/tax/ato-creates-specialist-task-force-to-tackle-cryptocurrency-tax-evasion-20180110-h0fyaz>, 검색일자: 2018.12.14); Australian Fintech(<https://australianfintech.com.au/ato-creates-specialist-task-force-tackle-cryptocurrency-tax-evasion/>, 검색일자: 2018.12.17.); Deloitte(<https://www.taxathand.com/article/9227/Australia/2018/ATO-task-force-investigating-the-taxation-of-cryptocurrency>, 검색일자: 2018.12.17)

166) 일부 뉴스에 의하면 호주 국세청의 가상화폐 TF는 특히 가상화폐와 부동산 거래의 연관관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함.

- 호주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좀 더 세부적인 암호화폐 과세 지침의 공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⁶⁷⁾
 - 비트코인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과세지침의 공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호주 과세당국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무처리지침을 발표하였으나, 비트코인과 성격이 다른 암호화폐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세무처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ICO에 대한 세무처리 지침의 발표 요청이 있음

6. 캐나다

가. 과세제도

1) 소득세

-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에 질의답변서를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소득세 목적상 상품(commodity)인 것으로 답변함¹⁶⁸⁾¹⁶⁹⁾
 - 암호화폐는 캐나다 조세목적상 '통화'가 아닌 '상품'에 해당하며 암호화폐의 거래는 '교환거래(Barter Transactions)'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함
 - 교환거래란 법정통화를 지급대가로 사용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상호 거래하

167) Bloomberg(<https://www.bna.com/australia-digging-cryptocurrency-n57982089733/>, 검색일자: 2019.1.3)

168) CRA Document No. 2013-051470117(http://www.canadiantaxlitigation.com/wp-content/uploads/2014/01/2013-051470117.txt?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inter-article-link, 검색일자: 2019.1.8)

169) Olivier Fournier and John J. Lennard, "Rebooting Money: The Canadian tax treatment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2014 Conference Report*, Canadian tax foundation, 2014, p.11:5.

는 행위를 의미함¹⁷⁰⁾

- 캐나다는 암호화폐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음
-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사업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되어 15~33%의 세율로 종합과세됨¹⁷¹⁾
 - 암호화폐의 투자·거래 및 채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 다만, 납세자의 채굴활동이 개인적 취미활동으로 분류되면 비과세됨
- 사업목적이 아닌 일반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의 50% 상당액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5~33%의 세율로 종합과세됨¹⁷²⁾
 - 자본소득은 가상화폐 처분으로 수취한 금액 또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가상화폐 취득 시 지급한 금액 혹은 이전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일반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달리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50%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됨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순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 3년간 소급 공제하거나 차기 연도로 이월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교환시점 등에도 자본이득세 납세의무를 가짐¹⁷³⁾

170)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fact-sheets/fact-sheets-2015/what-you-should-know-about-digital-currency.html>, 검색일자: 2019.1.8)

171) *Ibid.*

172) IBFD, Canada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Corporate Income Tax 및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검색일자: 2019.1.8)

- 암호화폐를 법정통화 또는 재화 및 용역과 교환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에 교환하는 시점, 증여하는 시점에도 자본이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GST/HST)

- 캐나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¹⁷⁴⁾
 - 캐나다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로 암호화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GST/HST)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는 일관적인 답변만을 제시하였음¹⁷⁵⁾
- 국세청의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암호화폐 매매거래 자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캐나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¹⁷⁶⁾¹⁷⁷⁾

173) Conard Druzeta, Simon Grant and Matthew Peters, *Blockchain&Cryptocurrency Regulation 2019*, Global legal insights, 2018, p. 249.

174) Olivier Fournier·John J. Lennard(2014), p.11:23.: Gowling WLG(<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17/canadian-taxation-of-cryptocurrency-so-far/>), 검색일자: 2019.1.9)

175) CRA Document No. 2013-051470117(<http://www.canadiantaxlitigation.com/wp-content/uploads/2014/01/2013-051470117.txt>), 검색일자: 2019.1.8)

176) Rotfleisch & Samulovitch Professional Corporation(https://taxpage.com/articles-and-tips/bitcoin/bitcoin-cryptocurrency-taxation/?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검색일자: 2019.1.9)

177) Gowling WLG(<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17/canadian-taxation-of-cryptocurrency-so-far/>), 검색일자: 2019.1.9)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자금세탁방지 측면의 규율

- 캐나다는 암호화폐중개업자의 정부기관 등록을 포함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측면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¹⁷⁸⁾¹⁷⁹⁾¹⁸⁰⁾
 - 캐나다는 2014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규제하는 법안(Bill-31)을 제정하여 의회 및 국왕의 승인을 받았으나 미발효 상태임
 -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Proceeds of Crime and Terrorist Financing Act,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자금용역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 MSB)’에 포함시킴
- 캐나다는 2018년 6월에 암호화폐의 규제방안 등을 담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함¹⁸¹⁾
 - 본 개정안은 FATF 규정 준수 및 캐나다 AML/ATF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중개업자 등의 규제방안을 담고 있음
 - 본 개정안은 90일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개정안 등록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 이하에서는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178) Gowling WLG(<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practice-areas/blockchain-laws-and-regulations/canada>, 검색일자: 2019.1.7)

179) Dentons(https://www.dentons.com/en/insights/alerts/2018/june/26/virtual-currency-and-canadas-anti-money-laundering-framework?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View-Original, 검색일자: 2019.1.7)

180)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http://canafe-fintrac.gc.ca/guidance-directives/overview-apercu/FINS/2-eng.asp?s=12>, 검색일자: 2019.1.7)

181) Government of Canada(<http://www.gazette.gc.ca/rp-pr/p1/2018/2018-06-09/html/reg1-eng.html>, 검색일자: 2019.1.8)

- 본 개정안에 의하면 암호화폐란 ① 법정통화가 아닌 것으로서 다른 암호화폐나 자금(fund)으로 쉽게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또는 ② 사람이나 단체가 ①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통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의미함¹⁸²⁾

-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암호화폐중개업자 등은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FINTRAC)에 등록하여야 하며 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기록보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됨¹⁸³⁾
 - 암호화폐 취급업자(dealing in virtual currencies)¹⁸⁴⁾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인 MSB에 포함시킴
 -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FINTRAC에 등록하여야 함
 - 캐나다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됨
 -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업을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의 교환업을 제공하는 자도 해당됨
 -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건당 1만캐나다달러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음
 - 참고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MSB는 국제송금거래(international electronic fund transfers)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가지나, 암호화폐 거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보고되어야 함
 -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1천캐나다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 기록보관, 실소유주 확인의무가 있음
 - 그 외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이 부과됨

182) *Ibid.*

183) Globe Business Media Group(<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6291224-a8e8-4d33-ba4e-d0da3097d508>, 검색일자: 2019.1.9)

184) '암호화폐의 취급'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암호화폐 교환업체들과 관련 결제처리 업체(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s and value transfer services) 등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http://www.gazette.gc.ca/rp-pr/p1/2018/2018-06-09/html/reg1-eng.html>, 검색일자: 2019.1.8)

- 한편,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2018년 11월 「자금세탁방지법」 정기회의에서 암호화폐거래소의 라이선스제도 등과 같은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권고함¹⁸⁵⁾¹⁸⁶⁾
 - (제안 1)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하는 모든 과정을 MSB로 규정하고 동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
 - (제안 2) 암호화폐 지급제공업자에게 고객확인 의무, 필요시 실소유자 정보를 거래소 또는 정부기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동산 또는 현금카드(cash card)의 거래가 면밀히 추적될 것을 강조함
 - (제안 3) 암호화폐거래소를 엄격히 심사해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

2) 암호화폐 과세인프라

- 캐나다 과세당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상화폐교환업자 등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¹⁸⁷⁾¹⁸⁸⁾
 - 「소득세법」의 집행(조세의 징수 포함) 등의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캐나다 과세당국은 제3자에게 불특정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¹⁸⁹⁾
- 국세청은 건당 10,000캐나다달러 이상의 국제송금내역을 금융기관 등(MSB 포함)으로부터 제공받으나, 암호화폐 거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¹⁹⁰⁾¹⁹¹⁾¹⁹²⁾

185) HOUSE OF COMMONS CHAMBRE DES COMMUNES CANADA, *Confro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moving canada forward*, 2018, pp.55-65.

186) 참고로, 정부는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12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187) THORSTEINSSONS LLP(<https://www.thor.ca/blog/2018/08/taxation-of-cryptocurrencies-in-canada-what-business-leaders-need-to-know/>), 검색일자: 2019.1.8)

188)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rporate-reports-information/underground-economy-strategy-2018-2021.html>), 검색일자: 2019.1.8)

189) Income Tax Act 제231.2조.

190) Income Tax Act 제244.1조.

191)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http://www.fintrac-canafe.gc.ca/reporting-declaration/Info/rptEFT-eng.asp>), 검색일자: 2019.1.8)

- 2015년 1월부터 금융기관 등은 국세청에 건당 1만캐나다달러 이상의 국제송금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국제적 조세회피 등에 대한 대응목적으로 종전 FINTRAC에만 보고하던 내용을 국세청에도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납세자가 FINTRAC에 보고한 내용이 정보교환절차에 의해 국세청에 제공됨
 - 향후 「소득세법」이 「자금세탁방지법」 하위규정의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건당 1만캐나다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진행상황은 확인되지 않음
 - 현행 「소득세법」은 MSB 및 보고 대상 국제송금거래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⁹³⁾
- 국세청은 FINTRAC에 신고된 금융거래정보 중 조세범죄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¹⁹⁴⁾
- FINTRAC은 보고받은 금융거래정보 중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임의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음
- 납세자는 해외 암호화폐 투자액이 1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한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 투자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¹⁹⁵⁾¹⁹⁶⁾¹⁹⁷⁾
- 캐나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소득세법」 제233.3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해외자산’으로 해석함

192)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http://www.fintrac-canafe.gc.ca/reporting-declaration/Info/rptEFT-eng.asp>, 검색일자: 2019.1.8)

193) 관련하여 개정 전의 「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과 현행 「소득세법」의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194) OECD(2018), pp.103-106.

195) CRA Document No. 2014-0561061E5(<https://taxinterpretations.com/cra/severed-letters/2014-0561061e5>, 검색일자: 2019.1.22)

196) Olivier Fournier·John J. Lennard(2014), p.11:6.

197) Gowling WLG(<https://gowlingwlg.com/en/insights-resources/articles/2017/canadian-taxation-of-cryptocurrency-so-far/>, 검색일자: 2019.1.9)

- 캐나다 「소득세법」은 10만캐나다달러 이상의 해외 특정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Form T1135'를 이용하여 투자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⁸⁾

7. 싱가포르

가. 과세제도

-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과세원칙은 암호화폐를 재화 등과 교환할 때는 재화의 시장가치로 측정되며 채굴과 사업목적상 암호화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나 장기투자목적의 사업에는 과세되지 않음¹⁹⁹⁾
-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개된 시장가치로 대가를 측정하며 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시점의 암호화폐 교환환율을 사용하여 산정함
 -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란 재화나 용역이 암호화폐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음
- 통상적인 사업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소득이며 암호화폐의 채굴 또는 법정통화로의 교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대상임
- 다만 장기투자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사업은 처분 시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과세에서

198)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ternational-non-residents/information-been-moved/foreign-reporting/foreign-income-verification-statement.html>, 검색일자: 2019.1.8)

19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Specific-topics/Income-Tax-Treatment-of-Virtual-Currencies/>, 검색일자: 2019.1.31)

제외되어, 매매목적인 경우에만 과세됨

- 매매(trading)인지 자본소득인지는 목적물의 성격, 보유기간, 거래빈도, 거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실현시 상황, 동기, 자금조달특성, 타당성조사수행 여부·회계처리·의도에 대한 문서화 등 기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따라서 사업(business)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아 통상적인 개인의 암호화폐 매매거래는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 소비세 목적상 암호화폐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소비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²⁰⁰⁾

-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를 소비세(GST) 목적상 통화 또는 재화로 보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소비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시킴
-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면 교환거래(barter trade)로 보아 공급자가 소비세등록이 되어 있으면 과세가 이루어짐
 -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인과 암호화폐를 공급하는 인이 모두 소비세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및 암호화폐 모두에 과세됨
- 암호화폐를 싱가포르 역외의 공급자에게 지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됨
- 암호화폐가 게임내에서 다른 암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실제 통화 또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되기 전까지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 소비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암호화폐를 매도한다면 암호화폐 매각에 대해 소비세가 과세됨

- 다만 매각이 싱가포르 역내의 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짐

20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GST/GST-registered-businesses/Specific-business-sectors/e-Commerce/#sale_of_virtual_currency, 검색일자: 2019.1.31)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 싱가포르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중개인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 중에 있지만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음
 - MAS는 핀테크사업이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향후 제정될 규정에서 이를 규율할 것이라고만 답하고 있음²⁰¹⁾
 - 따라서 아직까지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²⁰²⁾
 - 「지금융역법률안(Payment Service Bill)」에서 전자지급토큰용역에 거래소 등을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²⁰³⁾
 - 다만,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의 정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법」 등의 규제를 적용받음
 - 증권형 토큰 또는 유틸리티형 토큰은 금융상품의 정의에 충족될 수 있음

20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http://www.mas.gov.sg/Singapore-Financial-Centre/Smart-Financial-Centre/FAQs/Cryptocurrencies/2016/Cryptocurrencies-1.aspx>, 검색일자: 2019.1.31)

20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Parliamentary-Replies/2017/prevalence-use-of-cryptocurrency.aspx>, 검색일자: 2019.1.31)

20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Speeches-and-Monetary-Policy-Statements/Speeches/2018/Explanatory-Brief-on-the-Payment-Services-Bill.aspx>, 검색일자: 2019.1.31)

8. 국제비교

가. 과세제도

1) 암호화폐의 정의 및 구분

- 주요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5개국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 국세청 지침은 암호화폐를 교환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데 이는 실물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화폐를 의미함
 - 법정통화 등으로 거래되고 매매될 수 있는 경우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가 됨
 - 일본 「소비세법」은 「자금결제법」상 암호화폐의 정의를 준용하며, 「자금결제법」상 암호화폐란 지급대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불특정인과 매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및 이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임
 - 독일은 암호화폐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개별 건별로 암호화폐가 「금융법」하의 결제단위로 분류되고 있음
 - 결제단위는 외환과 동일하나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차이점만 존재하는 「민사법」상의 사적 계약임
 - 호주는 「자금세탁방지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과세지침을 통해 암호화폐란 지급결제목적으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 단위로 규정함
 - 캐나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란 다른 암호화폐나 자금(fund)으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 통화로 규정함
 - 과세관청은 별도의 정의 없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함
 - 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암호화폐의 정의를 두고 있는 주요국 모두 규제대상인 암호화폐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만을 고려하고 있음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지급결제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 규제 및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판례로 형성된 Howey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되어 「증권법」 적용 여부가 판정되며 이는 현금투자·통상적 기업에의 투자·성과배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함
 - 독일의 경우 암호화폐 개별적으로 「금융법」상 증권, 지분, 자본투자의 정의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2) 소득세 과세제도

- 주요국은 암호화폐를 통화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국가별 암호화폐의 분류는 차이를 보임
 - 미국, 독일, 호주 및 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분류함
 - 독일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아 사적자산으로 분류함
 - 싱가포르의 암호화폐를 자본자산으로 분류함
 - 일본과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함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함
 - 개인의 암호화폐 채굴, 매매, 중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²⁰⁴⁾
 -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사업자와 구분된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4) 다만, 독일의 경우 암호화폐의 채굴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 주요국 중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임
 - 자본이득은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업목적 외 사적활동 또는 사용을 위해 매매한 경우 적용됨
 -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는 자본이득에 대한 일반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과세함
 - 미국은 암호화폐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일반세율로 종합과세하며, 1년을 초과하면 일반세율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함
 - 호주는 암호화폐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50%만을 일반세율로 종합과세함(1년 미만 보유자산은 100% 과세)
 - 독일은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으로서 처분이익이 600유로를 초과할 때에만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캐나다는 자본이득의 50%만을 일반세율로 종합과세함

- 반면, 일본은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며 싱가포르를 과세하지 않음
 - 일본은 개인의 암호화폐 처분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일반세율로 종합과세함
 - 참고로, 일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된 자산은 저율로 분리과세(부동산, 주식 등)되거나, 종합과세를 하되 장기보유자산은 양도차익의 50%만을 과세함
 - 싱가포르는 개인의 암호화폐 처분손익을 자본손익으로 분류하나 자본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 개인의 비사업적 암호화폐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주요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는 소규모 거래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은 1년 초과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은 독신자 기준으로 38,600달러까지 비과세함

- 일본은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및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 독일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경우에도 자본이득이 6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호주는 사적용도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이 1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함
 - 단, 사적용도에 개인의 이윤창출 또는 투자목적은 포함되지 않음
- 그 외, 일본과 호주는 암호화폐의 분기로 신규 취득하는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0인 것으로 설명함
- 자산을 신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암호화폐의 분기시점에는 거래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과 소득금액을 0으로 간주함

3)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주요국 중 일본과 호주는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 목적상 화폐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하나, 독일과 싱가포르의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고 캐나다는 상품으로 분류함
- 일본과 호주는 당초 암호화폐를 재화로 분류하였으나, 각각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화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분류함
 - 독일과 싱가포르는 암호화폐를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함
 - 캐나다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견해가 있음
 - 미국은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주요국 중 캐나다와 싱가포르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일본, 독일 및 호주는 당초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세법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 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의 분류에는 차이가 있음

- 일본은 암호화폐를 화폐와 같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함
- 독일은 암호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이지만, 면세대상으로 규정함
- 호주는 암호화폐가 현금과 같이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지만, 교환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들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 세금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암호화폐의 지불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독일은 금융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목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판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호주는 이중과세문제, 납세협력부담의 증가에 따른 암호화폐를 이용한 디지털 시장의 성장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통화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인정하여 비과세하는 등 한 국가 내에서도 세목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기타

- 주요국 중 일본은 암호화폐의 소재지를 재산 소유자의 거주지로 보고 있으나, 캐나다는 국외 예치된 암호화폐는 국외재산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암호화폐 소재지를 재산 소유자의 거주지로 판단하므로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채무조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함
 - 국외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도 '국외자산명세서'가 아닌 '재산채무조서' 제출 대상임
 - 반면, 캐나다는 국외 예치된 암호화폐는 신고대상 해외자산으로 해석함

〈표 IV-2〉 주요국의 암호화폐 과세제도 비교

구분	암호화폐의 정의 및 구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류	과세	분류	과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가능(convertible)한 것만 해당함 • Howey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분류됨 	자산 (prop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자본소득 	-	-
일본	지급대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불특정인과 매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및 이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잡소득 	지급결제수단	비과세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단위의 금융상품 • (금융범상)개별적으로 양도가능성, 거래 여부, 청구권,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 	사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자본소득 	용역의 제공	면세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가능한 디지털 통화 (가치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파생되는 것이나 특정 자산의 수평 또는 향유 권리 제외) 	자산 (prop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자본소득 	회배	비과세/면세/영세율
캐나다	교환 가능한 디지털 통화	상품 (commod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자본소득 	명확하지 않으나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견해가 있음	명확하지 않으나 과세된다는 견해가 있음
싱가포르	명확한 정의 및 구분 확인되지 않음	지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사업소득 • 일반: 자본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비과세 	용역의 제공	과세

주: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나. 규제 및 과세 인프라

1) 납세자 등의 과세관청에 대한 정보보고

- 주요국 중 미국, 일본 및 캐나다는 납세자에게 암호화폐 관련 국세청 보고의무를 두고 있음
 - 미국은 ① 사업상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비과세되는 미국 수취인에게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② 상인과 고객의 지급결제 계약을 수행하는 제3자 결제조직으로서 연간 결제건수가 200건을 초과하고 거래금액이 연간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과세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일본은 2020년부터 재산채무조서 신고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함
 - 납세자는 매 과세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 소재지, 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캐나다는 국외 암호화폐 투자액이 1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투자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2)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 규제 관련

- 주요국 중 미국, 일본, 호주는 암호화폐를 자금세탁방지 법령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캐나다 및 싱가포르는 규제를 준비 중에 있음
 - 암호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은 자금세탁 및 조세회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은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2013년부터, 일본과 호주는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규제를 시행함
 - 독일은 2018년 6월 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까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임
 - 다만 독일 현행 「금융법」에서 암호화폐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는 2014년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의 암호화폐규제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
 - 2018년 6월 해당 법령의 하위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령을 준비 중에 있음
 - 이하에서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및 호주와 규제방안이 발표된 독일, 캐나다의 규제내용을 비교함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교환업자(거래소)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기록 보관의무 및 특정 규모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 암호화폐교환업자는 암호화폐와 현재 규제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연결지점이므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FinCEN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통화의 교환·결제·송금 등의 거래를 BSA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여 암호화폐교환업자(exchanger)와 관리자(Administrator)에게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일본은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독일이 이행할 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에서는 암호화폐교환서비스 참여 제공자와 관리지갑제공자(custodian wallet provider)에게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현행 독일 「금융법」 하에서 거래소 등 암호화폐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인가를 요구하고 있음
 - 호주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암호화폐 간의 교환업무만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캐나다는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

- 암호화폐의 취급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암호화폐교환업자, 관련 결제처리업체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주요국 중 독일은 암호화폐 관리지갑제공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준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일본과 캐나다는 정부 산하 연구회 및 의회에서 지갑관리업체 또는 지갑제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EU는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 제거를 위해서는 암호화폐교환업자뿐만 아니라 관리지갑제공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EU는 다양한 암호화폐 관계자 중 일부만을 규제에 포함시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추후 면밀히 추적하여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일본 금융청 산하 연구회는 암호화폐수탁업체(지갑관리업자)의 규제 필요성을 제시함
 -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암호화폐 지갑(crypto wallets)의 규제를 권고함
-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 과세당국은 암호화폐교환업자가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
 -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교환업자로부터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른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를 직접 보고받음
 - 과세당국은 재무부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의 위임을 받아 MSB(암호화폐교환업자 포함)의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집행력을 가지고 있음
 - 호주 국세청은 「조세법」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해 AUSTRAC에 신고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독일 국세청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일 금융당국은 보고된 의심거래 내용과 조세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향후, 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반영하여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독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과 캐나다는 금융당국에 신고된 암호화폐 정보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 일본 과세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신고된 암호화폐 정보를 확보할 수 없음
 - 캐나다 FINTRAC은 신고된 정보 중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임의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음
- 주요국 모두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여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임

3) 과세관청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직접 입수

- 미국과 캐나다 국세청은 제도적으로 암호화폐교환업자 등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국세청은 납세신고불이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비특정자료제출’제도를 이용해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고객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음
 - 미국 국세청은 비특정자료제출제도를 통해 제3자에게 식별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에 2013~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한 납세자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연방법원은 코인베이스에 2만달러 이상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령함
 - 캐나다 국세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암호화폐교환업자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소득세법」의 집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제3자에게 불특정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본 국세청은 탈루협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내역을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음
 - 일본은 2018년 12월에 과세당국이 탈루협약이 있는 고객의 거래정보의 제출을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정보조회 대상은 연간 1천만엔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자 중 절반 이상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류되는 자로 한정됨

4) 기타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과세제도 지침 및 과세인프라 모두 초기단계임
 - 미국 재무부는 2016년에 과세관청의 암호화폐 과세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나 지침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후속절차의 준비를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세청의 후속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8년 9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집행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추가 과세지침 등의 개발을 촉구함
 - 그 외 주요국에서도 현재 과세지침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일본 및 호주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과 호주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암호화폐거래이익이 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캠페인 등을 통해 알리고 있음
 - 일본은 암호화폐교환업자의 협조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간편화하고 있음
 - (소득세)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암호화폐교환업자가 연간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전자형태로 교부함.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간 암호화폐교환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함

- (상속세) 암호화폐교환업자가 상속인 등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암호화폐 잔액 등을 기재한 '잔고증명서'를 교부하여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절차를 지원함

- 주요국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공조조직을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음
 - 암호화폐는 국가간 이동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²⁰⁵⁾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는 2018년 7월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국제적 조세범죄 및 자금세탁에 공조하기 위해서 J5를 결성하고 각국의 자료 및 조세범죄 등에 대한 대응기술을 공유할 계획임

205) 安河内誠(2017). p.438.

〈표 IV-3〉 주요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과세행정 비교

구분	납세자 등의 과세관청에 대한 정보보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일반자산과 동일한 의무 부여 - 요건해당시 제3자 결제조직의 거래보고 - 일정요건에서 사업목적으로 임차료 등을 미국 비과세수취인 또는 독립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폐 관리자와 거래소를 MSB(MSB는 IRS의 관할임) 등으로 분류하여 의무부여 - 등록, 의심거래보고, 특정거래보고 등 • 국세청은 신고된 FIU 정보에 직접 접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S는 비특정자료제출권한을 이용하여 거래소의 정보를 입수함 •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과세행정이 원활하지 않아 재무부 및 국회의 개선타방이 계속되고 있음 •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와 조세범죄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조약(15) 결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부터 '재산채무조서'의 제출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 등록, 의심거래보고, 특정거래보고 등 • 국세청은 FIU 정보 접근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이 암호화폐교환업자에게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세법개정안 발표 • 납세자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 암호화폐교환업자의 협조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간거래보고서(소득세), 잔고증명서(상속세) 제공 - 국세청이 자동소득계산프로그램 제공
독일	<p>확인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L에 제5차 지침이 향후 반영될 예정임 - 교환서비스 참여제공자와 관리지갑제공자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AML 의무 부여대상에 포함 - FIU의 정보 접근·교환 등의 권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금융범상) 암호화폐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인가가 요구됨 - 원금증개용역의 플랫폼거래소 - 암호화폐의 상업적 매매, 채굴 성과에 대한 지분 공모 등

구분	납세자 등의 과세관청에 대한 정보보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타
호주	<p>확인되지 않음 (기록보관의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의심거래보고, 특정거래보고 등 - 암호화폐 간의 교환업무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청은 신고된 FIU 정보에 직접 접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조조직(15) 결성 • 데이터매칭기술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투자자 추적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암호화폐 투자액이 1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투자내역 신고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호화폐교환업자에 대한 규제법령이 제정되었으나 미시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업자의 등록, 의심거래보고, 특정거래보고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미시행 중임 - 2018년 6월 해당 법령의 하위법령(안이 발표되어 논의 중에 있음) • FIU는 조세포탈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임의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상화폐교환업자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 국제공조조직(15) 결성
싱가포르	관련 규제 및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및 임법 진행 중		

자료: 저자 작성.

V. 시사점

1. 과세제도

가. 암호화폐의 구분

- 이하에서 논할 암호화폐 과세 방안은 '교환의 매개체' 성격의 암호화폐에 국한될 필요가 있음
 - 암호화폐를 크게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유틸리티 코인, 증권형 코인으로 구분할 경우 교환 매개체 이외의 성격을 띠는 코인들의 경우 해당 코인의 성격에 맞는 기존 제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 유틸리티 및 증권형 코인은 성격에 따라 공동사업, 지분증권(주식), 채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또한 주요국의 사례 등을 비추어보거나 현행 과세체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전자화폐나 게임머니 등은 제외하여야 함

- 또한,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창설과 발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적용 대상 암호화폐를 열거한 뒤 규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최소한 거래의 매개 목적으로 발행되며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거래의 매개 판단은 유틸리티 및 증권형 코인과 구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증권 등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코인이 기초자산을 근거로 발행되거나 미래 수익창출에 따른 배분이 이루어지거나 코인 보유를 통해 특정 기술의 효용을 향유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정의에서 배제함
- 블록체인 등의 암호화폐가 기반한 기술 등은 분류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이는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함

나. 소득세

- 암호화폐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자본소득(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자본소득 내에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운용하고 있음
 - 세 번째 방법은, 자본소득(양도소득)으로 분류하되 기존의 자본소득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장단기로 나누어 장기 보유에 혜택(낮은 세율, 공제 또는 비과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미국, 호주 및 독일에서 운용하고 있음
 - 거래세로의 부과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소득에 대한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해외에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현재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⁰⁶⁾
-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 결집효과와 과세행정 및 납세협력의 비용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206) 중앙일보,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적극 검토…가업상속 요건도 완화”」, 2019.1.31.

- 암호화폐로부터의 소득은 기간과세가 아닌 실현 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년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결집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수많은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종합과세 소득신고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일본에서는 이러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²⁰⁷⁾
-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역시 결집효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존재함
-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역시 결집효과 문제가 존재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조정 혹은 공제제도 도입 등의 보정이 필요할 것임
 - 미국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세율로 과세하며 그 이상이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독일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 캐나다나 호주는 모든 매매에 대해 과세되나 1년 초과 또는 전 경우에 대해 50%만을 종합과세함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에서도 일반 누진세율 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²⁰⁸⁾
 - 양도소득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도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생하나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은 작을 수 있음
-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경제적 행위가 투자목적임을 고려하여 여타 금융상품과 유사한 형태의 과세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주식과 유사한 과세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207) 일본 유신당의 후지마키 다케시 의원은 2018년 12월 10일 '암호화폐세제를 바꾸는 모임'을 발족하고 FX 및 주식과 암호화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및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의 분리과세 등의 세제개편을 제안함(<https://kasou-tax.jp/>, 검색일자: 2019.1.28)

208) 「소득세법」 제95조.

-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비해 거래소 외 모든 거래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설정할 수 있음
 - 가령, 장내거래는 주식양도소득세에서의 낮은 세율 수준, 장외거래는 주식양도소득세에서의 높은 세율 수준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 및 세율 수준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독일, 캐나다 및 호주의 암호화폐 과세방식은 통상적인 자본소득(특히,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차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
 - 기존 금융시장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에서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혹은, 세수효과와 기존 금융시장과의 형평성, 납세인식이 낮은 개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기준 이상의 과세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정책적 지원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장내시장의 과세기준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대주주 등의 개념이 없으므로 금액기준만을 고려한 과세를 적용)

-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이동 가능성 및 과세초기의 납세의식 부족 등에 대응하여 거래소에 한시적인 원천징수의무 또는 거래내역신고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음
 - 암호화폐 과세제도 도입 시 기준금액에 따라 수많은 납세의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없던 납세의무로 인해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납세신고 불이행은 암호화폐의 추적이 어렵다는 익명성과 손쉽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이동 가능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납세신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²⁰⁹⁾와 유사하게 일정한 낮은 세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거나 파생상품 등과 같은 거래내역신고²¹⁰⁾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또는 거래내역신고는 납세협력비용과 세원 추적이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세제는 단기 납세협력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유인책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기적으로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며 현행 부동산 세제와 유사하게 장기의 경우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납세의식수준 향상과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세율 과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 부가가치세

- 주요국의 사례로 비추어보았을 때 암호화폐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추세임
- 과세대상 암호화폐가 거래의 매개로 사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거나 금융상품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조사대상 주요국에서 암호화폐의 공급을 비과세하거나 면세로 분류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공급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기는 하나 아직 과세체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이며

209)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7호.

210) 「소득세법」 제174조의2.

현행 제도도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제한적인 과세제도임

- 따라서 암호화폐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임
-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비과세)로 볼 것인지 또는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나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판단의 문제임
 - 이론상으로 비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수출 시 면세 포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지급결제수단 또는 화폐로 보아 비과세로 보는 일본과 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면세하는 독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비과세와 면세 및 영세율을 적용하는 호주로 나뉨
 - 호주는 암호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지만, 교환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 실무상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나 가능한 한 제도내로 편입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금융상품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면세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2. 규제 및 과세 인프라(조세행정 측면)

가. 입증책임

-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거래추적이 어려워서 과세사건을 포착하더라도 조세채권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과세관청이 신고되지 않은 거주자의 암호화폐 양도를 포착하여 과세처분을 하려고 해도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경우는 특히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취득 후 국내 거래소에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납세자가 취득가액을 소명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음
 - 이는 암호화폐가 주식, 부동산과는 달리 액면가액, 기준시가 등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시장가격이 있다고 해도 취득시기 추적 불가능으로 인해 간주 취득원가를 설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법령상 명문으로 취득 원가 및 시기 등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입증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나 암호화폐의 익명성이란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
 -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등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강력한 가산세 규정과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전혀 다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명확하므로 재산권 침해 문제의 여지가 존재하며, 양도금액 기준으로 일정비율만큼을 과세하는 방법은 소득과세에 부합하지 않음
 - 가산세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세액이 불명확하므로 양도금액기준으로 거래행위 위반 가산세인 현금영수증 미발급과²¹¹⁾ 동일하게 20%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취득가액 등을 입증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포탈세액이 아닌 양도금액을 조세포탈 등의 기준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취득가액 등을 입증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1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나. 거래소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 암호화폐 남용의 문제는 조세회피 이외에도 자금세탁 및 테러금융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또는 「금융법」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미국, 일본, 호주는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에 암호화폐거래소 등을 포함시켜 거래소 등록, 의심거래보고, 특정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과 캐나다는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아직 미시행이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며, 독일은 「금융법」에서 암호화폐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인가를 요구하고 있음
 - 각국의 과세관청은 정보보고 등을 통해 과세거래 정보를 파악하여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금융을 제한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인을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암호화폐와 관련된 인의 범위에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관리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거래소와 관리자 및 관리지갑제공자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거래소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투자중개업자,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므로 제도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관리지갑제공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보유·보관·이전하기 위해 사적 암호화된 키(cryptographic key)를 보호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거래소가 관리지갑제공자임
 - 관리자는 암호화폐의 발행, 유지, 보수 등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국내에서 추후 개발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리자가 이에 해당할 것임

- 이외에 거래 플랫폼, 거래중개인 및 단순 지갑제공자 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효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EU 지침에서는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플랫폼),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단순 지갑제공자)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거래소와 관리지갑제공자만을 범위에 포함함
 -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관할의 불명확성으로 보이는데 거래 플랫폼, 단순 지갑제공자의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제공자가 해외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의 대상에 포섭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유사하게 사적 거래중개인의 경우도 국외에서 거래 중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법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점은 동일하나, 국내 거래자 모집을 위한 홍보 등의 국내 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음
 - 특히, 장외거래는 거래신용이 증시되어 계약서 등 작성이 이행보증을 위해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가 개입하므로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포함이 필요함

-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는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외직접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중개인을 거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암호화폐의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클 것으로 보임
 - 국외 거래소와 국외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반드시 국내 중개인을 통하도록 하고, 국외 지갑제공자의 지갑사용은 제한하는 방법임
 - 그러나 이미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사례가 없으며 거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의무이행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심거래·특정금융거래 이외에 대상자의 등록 또는 인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폐 시장참여자들이 포함되면 자동적으로 현행 의심거래·특정금융거래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요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의무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등록 또는 인가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등록과 인가의 차이에 따라 과세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독일과 같이 등록보다 강력한 규제인 인가를 요건으로 하게 되면 규제비용에 대한 대가로 장내와 장외의 과세제도에 차이를 두어 인가된 거래소에 대한 유인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단순 등록인 경우 다르게 할 유인이 크지 않음

다. 제도권 외의 거래에 대한 대응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금세탁방지규정과 과세제도를 통해 등록 또는 인가된 거래소에서의 과세포착은 일정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장외거래는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함
 -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의 전자적 성격과 이에 따른 이동의 용이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는 포착할 방법이 없음
 - 사후적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원화)로 교환되는 경우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외의 자금세탁규제가 유연한 국가에서 외화로 교환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함
- 현재까지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EU에 서만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임
 - 조사대상 주요국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초기단계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장외 거래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S가 거래소에 대해 비특정자료제출 요구권한(John Doe Summons)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이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재무부 감사에서도 장외에 대한 언급은 없음
- EU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시 암호화폐의 모든 참여자가 의무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판단해보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현재는 FIU의 역량에 의지하겠다는 점을 피력함
 - 그러나 FIU의 정보접근권한과 각 회원국 간의 제한과 지체없는 정보 교환 및 추적 공조를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 못함
- 현행 기술적 상황과 국제적 공조 형태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인지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 과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
 - 암호화폐의 추적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외에서 현실상의 혜택으로 실현시키는 거래(즉, 법정통화로 교환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함
 -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폐의 거래를 위해서는 지갑이 필요하므로 지갑제공자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갑제공자의 지역적 위치 및 종류나 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가장 필요함
 - 특히, 과세관청은 수집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국가간 FIUs 간의 공조에서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암호화폐 특정거래 추적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최대한 가깝게 정보에 다가설 수 있는 기술향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EU의 권고와 같이 Pseudo 익명이 아닌 완전 익명성을 가진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금지도 고려해볼 수 있음

라. 자발적 신고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 암호화폐의 납세자는 대부분이 소액다수일 가능성이 높아 납세의식수준을 높여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과세제도의 설계에 따라 납세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래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소액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대다수이므로 과세제도의 창설로 인해 수많은 납세자가 새로이 발생함
 - 과세행정력으로 모든 납세자의 납세신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이한 과세제도의 설계와 더불어 이의 홍보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임
 - 기존에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설된 과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과 과세제도를 인지하더라도 개인들의 납세능력 부족으로 인해 신고불이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미국 IRS의 경우 매년 캠페인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납세신고 및 정보보고 의무를 주지시키고 있음
 - 이전에 미국 감사원에서는 납세자들이 암호화폐 소득의 납세의무 인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음²¹²⁾
- 따라서 (특히 초기에)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펼치고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캠페인은 국세청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개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거래소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래소에서 홈페이지 및 계좌개설자 등에게 안내문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함
 - 또한 암호화폐만의 과세교육 등 안내책자,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12)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May 2013, p.13.

- 암호화폐 개인투자자들은 다른 소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세 교육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임
- 암호화폐 거래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예정신고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거래소의 협조를 통하여 개별 납세자의 연간 암호화폐 거래기록 제공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양도 건별로, 주식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예정신고의무가 있으며, 파생금융상품은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됨²¹³⁾
 - 일본은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납세자에게 연간 암호화폐거래내역을 전자형식으로 교부함

213) 「소득세법」 제105조.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보도자료, 2018.1.18.
- 국세청,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4.
- 권용수, 「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일감법학』, 3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2.
- 금융감독원,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보도자료, 2017.6.23.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2017.12.28.
- _____,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보도참고자료, 2018.11.27.
- _____,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20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보도참고자료, 2018.1.23.
- _____,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보도참고자료, 2017. 9.29.
- 김병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경희법학』, 52(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김재진·홍민옥·박지혜, 『소득세 징수행정에 관한 연구-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 김진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2018.1.18.
- 김흥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15(3), 한국증권법학회, 2014.
- 배승욱, 「가상통화 법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논문, 2018.
- 신상화·강성훈, 『가상화폐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

- 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 연구』, 19(2), 한국증권법학회, 2018.
- 윤명옥,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8(2), 2018.6.
- 이강, 「비트코인에 관한 세법상 쟁점」, 『가천법학』, 7(4),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2.
- 정경영·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I)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8.
- 정순섭,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공청회, 2017.12.4.
- _____,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원, 2017.8.
-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32(1), 한국국제조세학회, 2017.2.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방안 발표와 반응」, 『주간금융브리프』, 27(3), 한국금융연구원, 2017.
- 한국은행,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2018.7.
- 한정미·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8.
- 홍도현·김병일,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5(1),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 安河内誠, 「仮想通貨の税務上の取扱い-現状と課題-」, 『税務大学校論叢』, 第88号, 2017.6.
- 財務省, 「[納税実務等を巡る近年の環境変化への対応について]-自主的な適正申告を促すための取組-」, 財務省 説明資料, 2018.10.17.

Amendments to Directive (EU) 2015/849.

An initiative of Coinbase, Coin Center, Union Square Ventures and Consensus,
A Securities Law Framework for Blockchain Tokens, December 7, 2016.

- Australian Government, *GST treatment of digital currency-discussion paper*, 2016.5.
- _____, Final assessment regulation impact statement-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mendment Bill 2017, 2017.5.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Digital currencies*, November 2015.
-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Aufsichtsrechtliche Einordnung von sog. Initial Coin Offerings (ICOs) zugrunde liegenden Token bzw. Kryptowährungen als Finanzinstrumente im Bereich der Wertpapieraufsicht*, Hinweisschreiben (WA), 2018.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Umsatzsteuerliche Behandlung von Bitcoin und anderen sog. virtuellen Währungen: EuGH-Urteil vom 22. Oktober 2015, C-264/14, Hedqvist*, 27. Februar 2018.
- Conard Druzeta, Simon Grant and Matthew Peters, *Blockchain & Cryptocurrency Regulation 2019*, Global legal insights, 2018.
-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2013-G001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March 18, 2013.
- Deutscher Bundestag, Schriftliche Fragen mit den in der Woche vom 2. Januar 2018 eingegangenen Antworten der Bundesregierung, 2018.1.
- Garrick Hileman and Michel Rauchs,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2017.
- OECD, *Effective inter agency co-operation in fighting tax crimes and other financial crimes*, 2017.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18/8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nd Amending Directives 2009/138/Ec And 2013/36/Eu*, 2018.6.

- Olivier Fournier and John J. Lennard, "Rebooting Money: The Canadian tax treatment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2014 Conference Report*, Canadian tax foundation, 2014.
- Peter Van Valkenburgh, "The Bank Secrecy Act, Cryptocurrencies, and New Tokens: What is Known and What Remains Ambiguous", *Coin Center Report*, May 2017.
- Policy Department for Economic, Scientific and Quality of Life Policies,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Leg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crime,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July 2018.
- Robert S. Fink, *Tax Controversies - Audits, Investigations, Trials*, LexisNexis, 2016.
-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June 2018.
-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As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Taxable Transactions Becomes More Common,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1, 2016.
- _____,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Bank Secrecy Act Program Has Minimal Impact on Compliance, Additional Actions Are Needed to Ensure Taxpayer Compliance*, September 24, 2018.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 U.S. Senate: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May 2013.
- _____, *Report to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Virtual Currencies -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GAO-14-496*, May 20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매일경제(<http://news.mk.co.kr/>)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
 중앙일보(<https://joongang.joins.com/>).
 코인프레스(<https://www.coinpress.co.kr>).
 한국방송공사(<http://news.kbs.co.kr/>).
 한국블록체인협회(<http://www.kblockchain.org/>).
 毎日新聞(<https://mainichi.jp/>).
 仮想通貨税制を変える会(<https://kasou-tax.jp/>).
 Aerial Partners(<https://www.aerial-p.com/>).
 AUSTRAC(<http://www.austrac.gov.au>).
 Australian Fintech(<https://australianfintech.com.au/>).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
 Australian Government Treasury(<http://sjm.ministers.treasury.gov.au/>).
 Australian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BaFin(<https://www.bafin.de/>).
 Bitcoin.com(<https://news.bitcoin.com/>).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
 Canadian Tax Litigation(<http://www.canadiantaxlitigation.com/>).
 CCN(<https://www.ccn.com/>).
 Coinhills(<https://www.coinhills.com/>).
 CoinMarketCap(<https://coinmarketcap.com/>).
 Coinpost(<https://coinpost.jp/>).
 Committee on Ways and Means(<https://waysandmeans.house.gov/>).
 Cryptocompare Research&Development(<https://blog.cryptocompare.com/>).
 Deloitte(<https://www.taxathand.com/>).

Dentons(<https://www.dentons.com/>).

Department of Justice(<https://www.justice.gov/>).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https://www.fincen.gov/>).

Financial Review(<https://www.afr.com/>).

Financial Services Agency(<https://www.fsa.go.jp/>).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http://canafe-fintrac.gc.ca/>).

Globe Business Media Group(<https://www.lexology.com/>).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

Gowling WLG(<https://gowlingwlg.com/>).

Grant Thornton Yamada & Partners(<https://www.yamada-partners.gr.jp/>).

HWL EBSWORTH LAWYERS(<https://hwlebsworth.com.au/>).

IBFD(<https://www.ibfd.org/>).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

Internal Revenue Bulletin: Notice 2014-21(<https://www.irs.gov/>).

IRS(<https://www.irs.gov/>).

Ministry of Finance(<https://www.mof.go.jp/>).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http://www.mas.gov.sg/>).

National Tax Agency(<https://www.nta.go.jp/>).

PWC(<https://www.pwc.com.au/>).

Rotfleisch & Samulovitch Professional Corporation(<https://taxpage.c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http://curia.europa.eu/>).

THORSTEINSSONS LLP(<https://www.thor.ca/>).

Untitled Inc(<http://www.untitled-inc.com/>).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ttps://www.sec.gov/>).

WLG(<https://gowlingwlg.com/>).

세법연구 18-07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발 행 2018년 12월 31일

저 자 신상화 · 홍성희 · 정훈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70-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